2023년 미추홀구 종합감사 결과

2023. 10.



[감 사 관]

2023년도 미추홀구 종합감사 결과

1.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2023. 7. 13. ~ 7. 26.(10일간)

○ **감사범위**: 2020. 11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감사반**: 3개반 17명

○ 감사중점

- 기업애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업무관행
- 주요 사업 재정·예산의 운영현황 확인·점검
- 토목·건축 공사의 집행과정과 안전성 점검
- 청렴 취약업무(인사, 회계, 계약, 공사, 인·허가 등) 운영실태
-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적정성
-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취약분야 운용 실태 등
- 직전 감사 등의 이행실태, 동일 반복 지적사례 등

2. 감사결과

○ 처분요구 총괄 ※ 처분요구 내역 집계

(단위: 건, 천원,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	기관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회수 징수	추급 환급	계	징계	훈계	경고
77	34	41	1	1	381,843	381,451	392	18	1	17	3

○ 처분요구 내역

(단위: 건, 천원, 건/명)

ΜШ	н аь	지 적 사 항	관련부서	(단위: 건, 천원, 건 처분내역					
연번	분야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비고	
1	인 사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부적정	○과	시정	회수 42,910	징계1 훈계4	-		
2	인 사	공무직근로자 채용 업무 부적정	○과 외 3개 부서	시정	-	훈계6	-		
3	복 무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소홀	○과	시정	회수 1,740	-	기관 경고		
4	지 방 세	취득세(산업단지 감면 등) 부과 부적정	□과 외 1개 부서	시정	추징 42,015	-	-		
5	지 방 세	재산세(건축물 구조 등) 부과 관리 부적정	□과	시정	추징 28,344	-	-		
6	지 방 세	주민세(사업소분) 부과 관리 부적정	□과	시정	추징 2,152	-	-		
7	세 외 수 입	세외수입(과태료) 부과 관리 부적정	◐과 외 2개 부서	시정	추징 259,700	-	-		
8	사 회 복 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및 급여 지급 소홀	■과 외 1개 부서	시정	회수 1,193 추급 392	훈계1	-		
9	사 회 복 지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업무 소홀	♦ 과	시정	-	-	-		
10	사 회 복 지	조건제시유예자 선정관리 업무 소홀	⊚과	주의	-	-	-		
11	문화세육교육	교육문화체육 분야 사무 민간위탁 관리 소홀	⑤과 외 2개 부서	시정	-	-	-		
12	교 육	★★센터 운영 및 관리 부적정	⊕과	시정	-	훈계2	-		
13	문 화	노래연습장업 관리 소홀	∆ ⊒⊦	주의	-	-	-		
14	문 화	문화유통산업 관련 과징금 관리 및 행정처분 소홀	▲ 과	주의	-	-	-		
15	문 화	문화재 현상변경 완료 신고 소홀	∆ 과	주의	-	-	-		
16	체 육	체육시설업 손해보험 가입업무 소홀	▶과	시정	-	-	-		
17	문 화	미술품 보관 및 관리 소홀	쇼 과	주의	-	-	-		

ΑШ	Ħ Vr	지 적 사 항	관련부서		ul¬			
연번	분야			행정상	재장	신분상	기관	비고
18	보 건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업무 소홀	♦ये	주의	-	-	-	
19	보 건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업무 소홀	♦य	주의	-	-	-	
20	위 생	축산물 위생검사(점검) 및 교육 관리 소홀	⊕ 과	시정	-	-	-	
21	위 생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행정처분 업무처리 소홀	◈ 과	주의	-	-	-	
22	위 생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 및 업소 관리 소홀	◈ 과	시정	-	-	-	
23	계 약	보행안전시설(핸드레일) 설계 및 구매 부적정		주의	-	-	-	
24	계 약	경관조명기구 조달구매계약 부적정	 ■과	주의	-	-	-	
25	계 약	시장현대회사업 물품 구매계약 부적정	① 과	-	-	훈계1	기관 경고	
26	공 유 재 산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미흡	유과	주의	-	-	-	
27	공 유 재 산	공유재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업무처리 미흡) 과 외 2개 부서	시정	-	-	-	
28	공 유 재 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부적정	⊠과	주의	-	-	-	
29	공 유 재 산	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소홀	▦과 외 6개 부서	시정	-	-	-	
30	공 유 재 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조치 미흡	∆ ⊒∤	통보	-	-	-	
31	계 약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사용협약 및 기술 사용료 반영 소홀		주의	-	-	-	
32	계 약	관급자재 설계 및 구매 소홀	▶ 과	주의	-	-	-	
33	계 약	우수조달제품 및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 검토 미흡	&과 외 3개 부서	주의	-	-	-	
34	계 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부적정	&과 외 5개 부서	시정	-	-	-	
35	계 약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과 외 2개 부서	주의개선	-	-	-	
36	계 약	단일사업 분리발주 부적정	∻ 동	주의	-	-	-	

ΑШ	H Vr	지 적 사 항	관련부서		ul¬			
연번	분야			행정상	재장	신분상	기관	비고
37	계 약	용역 준공검사 및 대가 지급 기한 준수 소홀	□과 외 8개 부서	주의	-	-	-	
38	회 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실 외 31개 부서, 6개 동	주의	-	-	-	
39	교 통	공영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 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소홀	☆과	시정	-	-	-	
40	토 목	도로점용 관리 업무 소홀	▦과 외 1개 부서	시정	추징 932	-	-	
41	건 설	건설공사 보험료 등 정산 소홀	⊕과 외 2개 부서	시정	회수 2,465	-	-	
42	건 설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소홀	▶과 외 7개 부서	주의	-	-	-	
43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공측량 절차 이행 소홀	▦과 외 2개 부서	주의	-	-	-	
44	자 원 순 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검수 및 판매소 관리 소홀	⊠과	주의	-	-	-	
45	자 원 순 환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관리 소홀	□과	시정	-	-	-	
46	자 원 순 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관리 소홀	♣과 외 9개 부서	시정	-	-	-	
47	환 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소홀	∑과	시정	-	-	-	
48	건 축	가설건축물 관리업무 소홀	⊕ 과	시정	-	-	-	
49	건 축	⊏마을 ⊿⊿ 리모델링사업관련 용역 발주 소홀	♣ 과	주의	-	-	-	
50	교 통	노외주차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기준 검토 소홀	☆과	시정	-	-	-	
51	지 적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자 정밀 조사 업무소홀	④ 과	시정	-	훈계1	-	
52	건 축	□□선터 건립공사 감독 소홀	소라	주의	-	-	-	
53	건 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소홀	⊕ 과	시정	-	-	-	
54	건 축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업무 소홀	⊕ 과	시정	-	-	-	
55	공 원 녹 지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및 종합보고서 처리 소홀	마	주의	-	-	-	

ΑШ	분야	지 적 사 항	관련부서		ul¬			
연번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비고
56	공 원 녹 지	ㄹ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추진 미흡	□과	주의	-	-	-	
57	공 원 녹 지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업무 소홀	□과	주의	-	-	-	
58	공 원 녹 지	공원녹지 분야 영조물 배상공제 업무 소홀	□과	주의	-	-	-	
59	지 역 경 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절차 소홀	 ■ ■	주의	-	-	-	
60	지 역 경 제	무단 폐업 공장등록업체 사후관리 소홀	▼과	주의	-	-	-	
61	지 역 경 제	담배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청문 절차 미준수	① 과	주의	-	-	-	
62	공 업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관리 소홀	▦과	시정	-	-	-	
63	공 사	가로등 시설물 정비 및 보안등 신설· 이설공사(단가계약)관련 사항	▦과	주의	-	-	-	
64	교 통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 행정처분 소홀	▦과	주의	-	-	-	
65	교 통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행정처분 소홀	 ■ ■	주의	-	-	-	
66	교 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행정 처분 소홀	 ☑과	시정	-	-	-	
67	교 통	자동차 수출이행여부 미신고자 행정처분 소홀	 ☑과	주의	-	-	-	
68	교 통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절차 소홀		주의	-	훈계2	-	

3. 처분요구서

※ 명세 별첨

인 천 광 역 시

징계·훈계·시정 요구

제 목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1.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미충족자 승진 임용

지방행정○○ A는 20**. *. *.부터 20**. *. *.까지, 지방행정○○(現 지방행정○○) B는 20**. *. *.부터 20**. *. *.까지, 지방행정○○(現 지방○○) C는 20**. *. *.부터 20**. *. *.까지, 지방행정○○ D는 20**. *. *.부터 20**. *. *. *.까지 미추홀구 ○과에서 교육훈련 실적 점검 및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등 업무를 담당, 주관 또는 총괄하였다.

가. 업무개요

미추홀구(○과)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반영하고 있으며, 20**. *월부터 20**. *월까지 총 **회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에 따르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 심사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은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로 관리하되,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법정 의무교육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일 연도 내 동일 과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교육훈련부서는 교육훈련실적을 오류 및 부정 입력한 경우 즉시 입력 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추홀구에서는 소속 공무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관리하여 동일직급에서 3년 이내에 동일과정을 중복으로 이수한 실적 또는 중복 입력한 실적 등을 즉시 삭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적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이 승진 심사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다. 관계사실

미추홀구에서는 20**년~20**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점검· 관리 및 적정 조치를 소홀히 하여 *명의 중복 입력(승인)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지 아니하였고,

중복 입력(승인)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삭제하는 경우 각 승진심사일 기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 어야 할 대상자인 *명이 승진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① A의 경우

A는 미추홀구 교육훈련 업무담당자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기별 또는 정기적인 교육훈련 실적 점검을 통해 오류 및 부정 입력(승인)된 교육훈련 시간을 삭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명의 중복 입력(승인)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훈련 실적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명의 승진심사 시 중복으로 입력(승인)된 교육훈련 실적이 반영되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충족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중복 입력(승인) 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는 경우 교육훈련 시간 미충족자로 승진심사에서 제외 되었어야 할 공무원들이 승진 임용되었다.

A는 20**. *. * 실시한 문답조사에서 위 대상자들의 승진심사 당시 교육훈련 시간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위 대상자들이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된 사항이며 업무 과실로 인해 인사행정에 중대한 하자를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의 행위는 미추홀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징계)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B, C, D의 경우

B, C 및 D는 각각 교육훈련 업무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로서 교육훈련 담당자 A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 검토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위 *명이 승진 임용되게한 책임이 있다.

라. 관계기관 등 의견

미추홀구는 교육훈련 실적 점검 소홀로 중복으로 인정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지 못한 업무과실을 인정하며, 향후 체계적인 상시학습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한 실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인사행정시스템 실적 입력 누락 등 교육훈련 실적 관리 소홀

가. 업무개요

미추홀구는 코로나19 대응 업무 장기화로 직원들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교육 훈련 참여 기회가 감소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집합교육 의무시간 충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년부터 20**. *월까지 승진심사 대상자들에 한해 집합교육 의무시간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운영하였고.

총 *명 승진심사 대상자의 집합교육 의무시간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인정하여 승진 임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년, 20**년 미추홀구 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 계획에 따르면 '집합교육시간 사이버교육 대체 인정'은 승진심사 대상자에 한정하여 운영하되,

승진심사 대상자의 교육훈련 실적이 집합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시간이 '충족'이면서 부족한 집합교육 시간만큼 인정시간 총계가 과충족 상태이면서, 승진심사일기준 6개일 이내 이수한 실적을 35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동일 직급에서 3년이내 동일과정을 이수한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은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로 관리되어야 하고,

전산시스템상 교육이수실적은 교육종료일 또는 교육수료일 기준 당해 연도 내 입력한 경우 인정하되, 전년도 교육이수실적을 현년도에 입력하는 경우 등소급입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연도말 교육이수로 수료통보시기가 차년도인경우, 부서장 공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 입력해야 할 시점에 출장·파견을 간경우 등 입력시기를 놓친 사유가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추홀구는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인사행정시스템에 입력 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별 또는 정기적 교육훈련실적 점검 등을 통해 인사행 정시스템 상 교육이수실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승진심사 대상자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는 인사

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바, 승진심사일 전일까지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이 인사행정시스템에 입력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훈련 입력 등 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관계사실

미추홀구는 승진심사 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대체인정 시간이 **시간 **분 부족하여 승진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확인되는 E를 적정한 조치없이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시켜 20**. *. *. 승진자로 의결하였다.

감사기간 중 미추홀구는 위 E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미충족은 인사행정시스템에 교육훈련실적 입력·정비가 누락된 사항으로 감사일 현재 위 E는 집합교육 대체인정 시간 **시간 **분으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 충족된 자라는 의견과 함께 E의 누락된 교육훈련실적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행정시스템상 당해연도에 입력한 실적만을 인정하고 소급입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행정시스템에 입력이 누락된 '◎◎ 컨퍼런스'등 *개 과정 **시간은 위 E의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기관주관교육으로 오류 입력되어 20**. *. *. 실시한 승진심사 시 집합교육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 교육'시간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F의 경우

지방행정○○ F는 20**.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담당자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기별 또는 정기적인

교육훈련 실적 점검을 통해 교육훈련실적이 인사행정시스템에 입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교육훈련 실적 입력 누락 등으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 훈련시간이 미충족되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결과적으로 감사일 현재 이 대상자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 관리는 인사행정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하고 원칙적으로 교육훈련 실적의 소급입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 바, 교육훈련 실적입력 누락 등 교육훈련 실적 관리 소홀로 승진심사 대상자가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이 승진에 반영되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다.

라.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미추홀구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중복과정 등 교육훈련 실적 점검이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 인정하며, 승진심사 전 교육 수료로 집합교육 대체인정 시간이 충족되었음을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교육훈련 실적 입력 누락으로 승진심사 대상자가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이 승진에 반영되지 않는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

3. 비대면 교육(재택교육) 대상사 교육훈련 여비 지급

가. 업무개요

미추홀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년~20**년 비대면 교육(재택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였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VII.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 지급에 따르면 교육훈련 여비는 별표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하며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육훈련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근무지내출장시의 교육훈련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제18조를 교육훈련 여비의 조정, 교육훈련 여비지급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는 20**. **. **.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소요되지 않은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증빙서류 등이 없이 부당하게 집행된경우 환수조치 하라'는 내용의 '비대면 교육에 따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으며, 미추홀구 교육훈련 담당부서인 ○과는 같은 날 이 공문을 접수하였다.

따라서, 미추홀구에서는 비대면 교육(재택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 원에게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한 경우 이를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다. 관계사실

미추홀구는 20**년, 20**년 비대면 교육 대상자의 교육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일비'는 여행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비대면 교육(재택교육) 시에는 소요되지 않은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총 *명, 42,910천원의 일비를 비대면 교육(재택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관계기관 등 의견

실무담당자인 A는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일비는 비용 소요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가능한 항목으로 판단하여 비대면 교육 대상자에게 일비를 지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 [장계] 승진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점검을 소홀히 하여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승진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위 A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훈계] ① 교육훈련 업무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로서 소속 공무원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승진임용되게 한 책임이 있는 위 B, C, D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승진심사 시 인사행정시스템 상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로 확인 됨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 관리를 소홀히 한 위 F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시정] 비대면 교육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일비 42,910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공무직근로자 채용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구 ☆소

관계부서 ○과외 3개부서

내 용

미추홀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각 사용부서에서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 복무 등을 관리하고 있다.

1. 단순노무원(단순조무원) 채용 부적정

가. 업무개요

미추홀구(○과)는 각종 민원 응대 및 직원 후생복지 업무에 대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규정에 따라 20**. *월 단순노무원 (단순조무원) 정원을 증원한 후, 20**. *. * 공고하여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거쳐 20**. *. *. 미추홀구 ◆◆ 직원인 G를 최종 임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법」제1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며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미추홀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구 본청, 직속기관, 동을 행정기구로 설치하고 있다.

또한, 규정 제1조(목적) 및 제4조(직종의 구분)에는 미추홀구 본청·의회사무국· 직속기관·동행정복지센터(이하 "구 본청 등"이라 한다)에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무직근로자 중 단순노무원1)의 직능별 수행 기능을 별표2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추홀구는 구 본청 등의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 등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공무직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수행할 업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미추홀구 소관 사무 외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미추홀구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이하 "◆◆"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을 대상으로 출자 및 대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 관계사실

미추홀구는 미추홀구 행정기구가 아닌 ◆◆의 사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관련 사무를 부여해서는 아니됨에도 20**. *. *. 미추홀구 행정기구가 아닌 ◆◆ 사무인 출자 및 대출 업무 지원 등을 채용 예정 직무에 포함하여 공고하는 등 구 본청 등이 아닌 ◆◆ 사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2)으로 공무직근로 자를 채용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구 본청 등 행정기구가 아닌 ◆◆ 출자 및 대출금 업무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있다.

¹⁾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 등 주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일일근무시간 중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장 근무인력과 방문민원인 접대·안내 등 단순잡역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²⁾ 미추홀구는 감사기간 중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근무하는 총무팀의 역할에 맞춰 ◆◆ 출자 및 대출관리의 전문성을 높혀 ◆◆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직원의 공무직 채용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 감소분을 직원복리 배당금으로 전 환하여 직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① H의 경우

지방행정○○ H는 20**.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미추홀구 ○과에서 공무직근로자 정원 관리, 채용 등 업무를 담당한 실무담당자로서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채용목적, 담당예정 직무 등을 검토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미추홀구 소속 공무직근로자가 미추홀구 행정기구가 아닌 ◆◆ 관련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② I의 경우

지방행정○○(現 지방행정○○) I는 20**. *. *.부터 20**. *. *까지 미추홀구○과에서 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후생복지 등 업무를 담당한 실무담당자이자위 H가 처리한 업무를 검토해야 할 실무책임자로서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채용목적, 담당예정 직무 등을 검토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수행업무를 부여하여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미추홀구 소속 공무직근로자가 미추홀구 행정기구가아닌 ◆◆ 관련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2. □□사 채용 부적정

2-1. 공고 후 응시자의 자격요건(적격여부 심사 기준) 임의 변경가. 업무개요

미추홀구(◎과)는 20**년, 20**년 □□사 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자격요건을 '관련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기관 및 시설 업무경력만 인정한다'고 제한하였음에도 공고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제**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사를 둘 수 있고, □□사의 자격·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조의*(□□사의 자격·요건)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에는 지자체는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경험과 자격(사회복지사 등)이 있는 자를 □□사로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 2021.8월)」에 따르면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기준, 요건 등은 직종·직무별로 요구되는 역량, 지식 및 기술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직무의 내용을 토대로 사전에 설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인사혁신처 「공정채용 가이드북(2019)」에 따르면 공고문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이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추홀구에서 □□사를 채용할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수행직무 내용 등 미추홀구 여건을 고려하여 채용 자격요건을 정한 후 명확히 공고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공고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재공고를 통해 응시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공고에 따라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되, 명확하지 않은 자격 요건으로 인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계사실

미추홀구는 20**년, 20**년 □□사 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자격요건 중 경력사항을 '관련 법률에 의한 설치·운영되는 기관 및 시설 업무 경력만 인정'한다고 공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위 채용시험 응시자의 적격여부 심사 시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³⁾ 등 재공고 등 절차 없이 공고 후 응시자의 자격요건 즉, 적격여부 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라. 관계부서 등 의견 및 검토결과

미추홀구는 향후 상기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20**. *월 실시한 □□사 채용 공고에는 자격 제한사항을 삭제한 후 적법하게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고 후 재공고 등 절차 없이 응시자의 자격요건, 서류전형 합격 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채용의 절차정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주요 채용절차를 위반한 사항에 해당된다.

2-2.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인원 임의 변경

가. 업무개요

미추홀구는 20**년 □□사 채용계획에 따라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거쳐 20**. *. *. '를 □□사로 최종 임용하였다.

³⁾ 미추홀구는 감사기간 중 공고에 경력을 제한한 것은 과거 채용시험 공고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위 채용시험 응시자의 적격여부 심사 시 공고에 따른 경력 제한사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위 채용시험 채용계획에 따르면 1차 서류전형은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한 후 접수 인원의 2~3배를 선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추홀구는 위 채용시험에서 응시자가 제출한 자격 및 경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후 고득점자 순 으로 2명 또는 3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한 후 면접심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관계사실

미추홀구는 위 채용시험 계획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한 자격 및 경력에 대해 심사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2명 또는 3명을 선발하여야 함에도 20**. *. *. 실시한 위 채용시험 서류전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자인 응시번호 *번 L, 응시번호 *번 N을 제외한 *명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는 등4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법과 인원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서류전형 합격인원을 모집인원의 2배로 하는 경우에는 응시번호 *번 J와 응시번호 *번 M이, 합격인원을 모집인원의 3배로 하는 경우에는 응시번호 *번 M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되었어야 함에도 서류전형에 합격되었고, 부당하게 면접심사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③ P의 경우

지방사회복지○○ P는 20**. *. *.부터 20**. *. *.까지 미추홀구 ◎과에서 20**년 □□사 채용 업무를 담당한 실무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응시 자격요

⁴⁾ 미추홀구는 감사기간 중 위 채용시험에서 부적격자 2명을 제외한 4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였다는 의견을 제 시함.

건 등을 명확하게 공고한 후 공고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2-1, 2-2 공고 후 임의로 심사기준(자격요건), 합격자 결정방법 및합격인원(배수)를 변경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되었어야할 대상자를 합격시키는 등 미추홀구 공무직근로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

④ Q의 경우

지방사회복지○○ Q는 20**.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미추홀구 ◎과에서 20**년 □□사 채용 업무를 담당한 실무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응시 자격요 건 등을 명확하게 공고한 후 공고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2-1 공고 후 임의로 심사기준(자격요건)을 변경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미추홀구 공무직근로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

3. ♠♠ 채용 부적정

가. 업무개요

미추홀구(■과)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해 ☆☆를 두고 있으며, 20**년, 20**년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를 채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년, 20**년 위 채용시험계획에 따르면 ♠♠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서류전형은 각 심사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를 선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응시자 중 ① 공공부문 🚫 업무 경력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③ 인천 미추홀구 거주자에게는 면접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1차 서류전형(50점)과 2차 면접심사 점수(50점)를 합산한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채용시험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는 채용예정, 공공부문(◇◇〉) 직무분야에 대한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누락시 증명서 불인정)되어 있는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되,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미추홀구는 위 채용시험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심사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되, 심사항목별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 3배수를 선발하여 면접심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면접심사에서는 가점 부여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한 후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관계사실

미추홀구는 20**년, 20**년 🗘 🗘 채용시험에서 채용계획과 다르게 면접심사가 아닌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였고, 서류전형 합격자가 변경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20**년 채용시험 응시번호 *번 R⁵⁾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여한 가점을 제외하는 경우 서류전형 심사점수 *점, 합격순위 4위로 불합격 대상자임에도 서류전형에

⁵⁾ 경력확인 결과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없어 자격요건 미충족자로 불합격임에도 서류심사 시 의료기관 근무경력을 0점으로 부여한 후 서류전형 심사 진행함.

합격되었고 응시번호 *번 S는 서류전형 심사점수 *점, 합격순위 3위로 서류전형 합격자임에도 부당하게 불합격되었으며,

20**년 채용시험에서도 서류전형시 부여한 가점을 제외하는 경우 합격자인 응시번호 *번 T와 *번 U는 심사점수 *점 합격순위 4위6)로 불합격 대상자인 반면불합격자인 응시번호 *번 V는 심사점수 *점 합격순위 3위로 합격 대상자임에도부당하게 불합격되었다.

아울러, 미추홀구에서는 20**년 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인 *번 W가 접수 시제출한 경력 중 기병원, ㄴ병원, ㄸ병원 등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서류보완 등 조치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발급)한 후 경력으로 인정하였고, 서류전형 심사시 위 경력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있다.

다만, W는 위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서류전형 심사점수 *점, 합격순위 1위로 서류전형 합격대상자이다.

⑤ X의 경우

지방사회복지〇〇(現 지방사회복지〇〇) X는 20**. *. *.부터 20**. *. *.까지 미추홀구 ■과에서 20**년, 20**년 🗘 🗘 채용 업무를 담당한 실무담당자로서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변경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미추홀구 공무직근로자 채용의 공정 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

⁶⁾ 서류전형 심사결과 *점으로 동점자임

4. □□사, ●●원 채용 부적정

4-1. 직종별 구분없이 채용절차 진행, 직종 임의 부여

가. 업무개요

미추홀구는 <□</br>

 리수홀구는
 □
 □
 □
 ○
 □
 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규정 제4조(직종의 구분)에 따르면 미추홀구 소속 공무직근로자는 단순노 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건강관리사, 금연상담사, 예방접종원, 행정사무원 등의 직종으로 구분되고.

□□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 및 ○○ 등의 행정서비스 제공 또는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원은지역주민의 □□□ ≪≪을 위한 ◐◐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규정 제6조(정수책정요구)제2항에 따르면 사용부서는 공무직근로자의 결원발생 시 그 결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채용할 사유가 있을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으로 관리부서에 결원보충 요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은 결원보충 요구 및 승인을 직종별로 구분하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미추홀구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규정 제7조(정수책정승인)[별표1]에 따라 부서별·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미추홀구에서 공무직근로자를 결원을 채용으로 충원하고자 할 때에는 직종별 결원에 대해 채용예정인원을 정하고, 모집, 응모, 심사, 선발 등채용과정 전반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운영⁷⁾하여야 한다.

다. 관계사실

미추홀구는 20**. *. *. *. 공고하여 실시한 20**년 공무직근로자(□□사, ◐◐원) 채용시험에서 채용예정인원을 채용분야별(직종별)로 구분하여 각각 1명으로 공고하고, 채용분야별(직종별)로 모집, 심사, 선발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자격요건이 동일하다는 사유로 채용분야별(직종별) 구별없이 응시자로부터 응시원서를 접수하였고.

□□사와 ●●원의 직무내용이 상이하고 요구되는 역량, 지식 및 기술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심사®를 거친 후 고득점자 순으로 2명을선발하여 임의로 직종을 부여하여 공무직근로자를 임용하였다.

4-2. 시험위원 제척·회피·기피⁹⁾제도 미운영

가. 업무개요

미추홀구는 20**년 실시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면접심사를 위해 각각

⁷⁾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 2021.8월)

⁻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위해 채용기준, 요건 등은 직종·직무별로 요구되는 역량, 지식 및 기술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직무의 내용을 토태도 사전에 설정하고 공개

^{8) 20**}년 미추홀구 공무직 채용 서류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미추홀구 공고 제20**-***호)

^{- ▨▨}사 및 ◐◐ 업무에 대해 선택지원이 불가함을 알림

⁹⁾ 제척: 채용기관이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 위촉 시 특정인 배제 회피: 심사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스스로 심사위원 미참여 기피: 응시자가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특정심사 위원 배제 요청

4명의 면접위원을 위촉하여 20**. *. *. , 20**. *. *. 면접심사를 실시하였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고용노등부, 2019.9월)」제13조 (채용절차)에 따르면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 2021.8월)」에는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채용예정자 선발을 위한심사위원은 가급적 외부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10)에서도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위해 서류·면접심사 시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추홀구에서 위 채용시험 면접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응시자와 친족 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서는 아니되고,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의 경우 당해 응시자의 면접심사 시 제척·회피하여야 하며, 면접심사 전 심사위원에게 해당사항을 교육하고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제척·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¹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공무직, 단기 근로자)의 종합적 공정채용 기준이 미정립되어 있고, 관리감독 체계도 부재함에 따라 최근 행정기관 공무직 등 비공무원 채용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3. 3월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마련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회 의결로 권고함.

⁻ 시험위원(내부위원) 위촉 시 제척·회피 등 적용, 위반시 제재 방안을 규정화할 것을 권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관계사실

미추홀구에서 20**. *. *. 임용한 □□사 Y와 20**. *. *. 임용한 □□원 Z는 공고 당시 채용 예정부서인 미추홀구☆소 ▲과(□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자로.

미추홀구에서는 위 대상자의 면점심사 시 면접위원 중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에 있는 ▲과장 AA와 □팀장 AB를 제척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면접위원 제척·회피 없이 면접심사를 실시하였고, 면접위원과 근무 관계에 있는 응시자가 최종 합격되어 임용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⑥ AC의 경우

지방간호○○ AC는 20**. *. *.부터 20**. *. *.까지 미추홀구 ▶과에서 20**년 □□사, ◐◐원 채용 업무를 담당한 실무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채용과정에서 주요 채용 절차인 시험위원 제척ㆍ회피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시험위원과 근무관계에 있는 응시자 채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미추홀구 공무직근로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

4-3. 관계기관 등 의견

미추홀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소 전 직원이 24시간 코로나 대응업무에 동원되는 등 국가적 비상상태에서 갑작스런 팀원의 결원으로 업무량이 과다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실무담당자가 '**. *월 최초 임용자로 임용이래 코로나 상황실 등 근무를 하다가 20**년 처음으로 ■■ 및 ①①사업을 담당하게 되어 채용절차에 대해자세히 알아보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훈계] 관련 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를 소홀히 하여 미추홀구 공무직근로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위 H, I, P, Q, X, AC 등 6명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소속 공무직근로자가 규정에 따른 직종별 수행기능에 맞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및 기관경고

제 목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미추홀구(○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연가, 공가, 특별휴가 등 휴가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공가)제5호 및「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국민 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¹¹⁾을 받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하며,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와 2차 검진(재검진)은 공가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특별휴가)제7항에

¹¹⁾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따르면 구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¹²⁾별로 최대 20일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미추홀구 장기재직 특별휴가 시행지침(2018.8월)」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별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1회 사용시 최소 5일 이상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추홀구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건강검진에 따른 확진검사, 2차 검진 등「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다른 건강검진과 별개의 사유로 공가를 신청하는 경우이를 허가해서는 아니되고.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검토한 후 재직기간별 휴가일 수와 횟수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관계사실

가. 건강검진 공가사용 부적정

미추홀구는 20**년~20**년「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총 **명의 소속 공무원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가하였고, 이 공무원들은 각각 1일분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1,040,28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나. 장기재직휴가 사용 부적정

미추홀구에서는 총 *명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횟수를 초과하여 장기재직 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가하였다.

¹²⁾ 재직기간 산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

^{-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항, 제3항에서 인정하는 재직기간 합산

⁻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미산입, 다만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산입

환경*급 AD 등 5명은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범위내에서 휴가를 사용하였지만 분할 횟수 4회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

또한, 사회*급 AE는 재직기간 30년 이상 휴가 사용시 휴가일수와 횟수를 모두 초과하여 법정 휴가일수 20일을 초과한 2*일의 휴가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행정*급 AF는 재직기간별 20년 이상 30년 휴가 사용 시에는 일수와 횟수를 모두 초과하여 법정 휴가일수 20일을 초과한 2*일의 휴가를 부당하게 사용하였고, 재직기간 30년 이상 휴가 사용시에는 법정 휴가일수 20일을 사용하였으나 횟수 4회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사회*급 AE와 행정*급 AF는 재직기간별로 부여되는 휴가일수를 초과 사용함으로써 총 700,290원의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미추홀구는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에 대해 관련 규정 미준수 사례임을 인정하며,

분할 횟수 초과 사용자의 경우 개인에게 부여되는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한 점, 업무수행을 위해 장기간의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이 규정을 오인하여 사용한 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분할횟수 2~20회까지 다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횟수 초과 사용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환수는 과다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복무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추홀구 장기재직 특별휴가 시행지침에 분할 사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대부분의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바,

분활 횟수 초과 사용자의 경우 횟수 초과로 인해 초과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환수하지 않더라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하므로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 재직 휴가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인정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건강검진 공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연가보상비 1,740,57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건강검진 공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여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기관 차원의 주의가 필요하여 경고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취득세(산업단지 감면 등) 부과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지방세법」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및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관리 부적정

「지방세 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8조제5항제2에 따르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지방세법」제20조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 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감면받은 납세의무자가「지방세법」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지방세법」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산업단지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동 ***-* 번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확인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30,976,9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취득세 신축 취득가액 부과 관리 부적정

「지방세법」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제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

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가격의 범위는 같은 법 제10조제5항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축 시 지방세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제20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취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동 ***-**번지 오피스텔등 *개소의 취득세 등 4,973,12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 취득세 부과 관리 부적정

「지방세법」 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제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

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취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호 기구에 대해 취득세 등 962,79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4. 차량 취득세 감면 관리 부적정

「지방세 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르면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 차 등에 대한 감면은「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가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 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 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 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 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 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감면받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차량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확인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10대 차량의 취득세 등 5,102,41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과세 누락된 산업단지 감면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 42,015천 원을 조속히 부과· 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재산세(건축물 구조 등)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지방세법」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매년 6월 1일 기준 납세지에 소재하는 부동산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건축물 구조 재산세 부과 관리 부적정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제121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당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하여야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07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다.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

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시가표준액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은「소득세법」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등의 사항을 적용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시가표준액에 해당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재산세 건축물의 구조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적용 산정하여 부과해야 함에도 ○○동 ***-**번지 등 *개소의 *명 재산세등 21,741,16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건축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리 부적정

「지방세법」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 상은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 다) 이며, 같은 법 제143조, 제14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고, 건 축물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 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고, 제 2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공장 등)에 대하여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동 ***-*번지 □□(주)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5,128,41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3.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재산세 감면 부적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제1호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07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받은 ○○동 **-**번지 ■■어린이집에 대하여 20**. *. *. 폐업하였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이를 확인하여 재산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재산세 등 1,474,970원을 과세 누락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과세 누락된 건축물 구조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 28,344천 원을 조속히 부과· 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주민세(사업소분)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지방세법」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과세기 준일 7월 1일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 루어지는 장소에 대하여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구「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0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7월 1일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같은 법 시행령제78조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2배를 세율로 적용하며,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매년 7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주민세 재산분을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분부터 사업소분의 세액은 "「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

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80조와 제82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개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건, 2,152,51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과세 누락된 사업소분 주민세 등에 대하여 2,152천 원을 조속히 부과· 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세외수입(과태료)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외 2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의견 제출 기회 부여와 함께 사전통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전통지한 감경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감경되기 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어 본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명, 과태료 259,700,000원을 미부과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본 부과되지 아니한 과태료 259,7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훈계 요구

제 목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및 급여지급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1.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경우, 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I. 수급자 신청-'4. 신청절차(라. 신청접수), 8. 급여종류별 새올 민원접수 및 등록'에 따라 읍·면·동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문서를 받아 시스템에 신청등록 하며, 군·구에서는 교육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새올 민원접수 및 등록 등 민원처리를 군수·구청장이 처리해야 함을 숙지하고, 신청서류를 즉시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민원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 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는바, 만일 수급권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추가보완요구와는 별개로, 접수 받은 신청정보 및 제출서류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급여신청일의 자동부여는 물론, 새올민원행정시스템에 급여 종류별로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가 자동 부여 되도록 해야 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적법하게 처리해야 함을 상기하여야 한다.

또한, 군·구의 통합조사 담당부서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접수 즉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바,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등 조사대상 확인 단계를 거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을 포함한 공적자료 조회를 요청하여 조회된 자료를 우선 적용하되, 신청인이 해당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입증자료를 제출 할 경우 자료등록 후 수정 결과를 적용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접수된 민원 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사담당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를 하였을 때 지체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서를 통지해야 하되,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 권자가 군·구에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 즉 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시작되며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시행령 제6조,「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로 책정된 날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신청관련 서류를 받은 읍·면·동에서는 제출받은 즉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를 입력·등록한 후, 군·구 통합조사팀으로 즉시 이송하여야 하며, 군·구 통합조사팀에서는 이송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서류의 신속한 접수처리는 물론, 금융재산을 포함한 공적자료, 주택조사 등 조회요청 및 회신결과 반영, 생활실태조사, 결과 처리 등 일련의 절차를 지체없이 수행하여 최저생활보장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급여가 적기에 지원되도록 읍·면·동과 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조사업무를 철저히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새올민원행정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신청서류 이송 및 접수, 관련기관으로의 자료조사 요청, 보완보정 요구'등 절차 이행을 지연 처리함에 따라 생계곤란 등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조속히 제공되어야 할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뒤늦게 지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유형별 처리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추홀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급여신청자 **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서류 제출일로부터 3일~15일이 경과한 이후에 미추홀구 ■과 ①팀으로 이송하였고, 서류를 이송받 은 ①팀에서는 해당 서류를 *일~*일이 경과 된 시점에서야 접수 처리함에 따라 신청조사 시작 시점이 지연되었으며, 이러한 접수 지연은 신청조사를 위해 사회보 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조회요청 되어야 할 공적자료조회(금융재산 조회 포함)요청, 주택조사 요청 지연과도 맞물려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자료회신 지연을 가 져오게 되는데,

위와 같은 사항은 [붙임1]과 같이 미추홀구 ■과 ●팀에서 법정처리기한 내조사 결정을 위해 서류접수와 함께 적기에 조회요청 해야 할 공적(금융포함)· 주택조사 등 자료를 공적자료(금융포함)의 경우 최대 *일(*건), 신규 주택조사는 최대 *일(*건) 경과 시점에서야 조회요청 함에 따라, 요청 지연된 기간만큼 생계 곤란 저소득 가구의 급여 결정 시기 또한 지체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에서도 알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급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즉, 부양의무자소득재산 등의 조사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해야 하고, 만일 추가 확인 등 보완이필요한 경우 법정 처리 기한 내 조사 처리되도록 급여신청자에게 지체없이 서류보완 등을 요구하여 급여신청자의 추가자료 제출 등 보완 완료 시기가 늦어지지않도록 해야 하나,

미추홀구 ■과 ●팀에서는 급여신청자 44명에 대해 급여 신청일로부터 상당 기간(접수일로부터 최대 44일, 금융회신일로부터 33일 경과)이 경과 된 이후에서야 '추가 기재 요구,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 미비'를 사유로 보완보정을 요구하며

새올민원행정시스템상에 요구사항을 등록처리하였으며, 이러한 보완요구 지연 일수에 급여신청자가 뒤늦게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보완이 완료되기까지의 소요일수(12일~85일)가 더해짐에 따라, 신청조사 결정 및 생계급여 등 지원 시기는 더욱 지연되었다.

그뿐 아니라, 신청조사가 완료 된 경우에는 새올민원행정시스템 상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제 조사결정일과 민원 완료 처리일이 일치되도록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시스템에 명확히 등록 처리하여야 함에도, 미추홀구 새올민원행정시스템의 급여신청자 *명의 신청조사 결과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명의 급여신청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조사결정 되기 최소 1일에서 최대 *일 전, 민원처리기한 내에 조사 결정된 것으로 '민원처리 완료'로 입력하는 등 사실과 전혀다르게 등록 처리하였으며,

이들 중 *명의 경우에는 실제 보장결정일과 민원처리일을 비교·확인한 결과, 법정민원의 처리기한이 짧게는 1일에서 최장 *일까지 초과된 시점에 보장결정되 었다.

위와 같이 미추홀구 ■과 ●팀에서는 수급자 신청에 따른 접수·조사 등 절차를 지연 처리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 *명의 수급자 선정이 신청일로부터 *일~*일이 경과 된 시점에서야 결정되었고, 이로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급여신청자에 대한 급여 지원 또한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들 중 *명은 생계급여와 동시에 의료급여를 신청한 대상자로, '급여 신청일'부터 급여가 개시되는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급여 선정일'에 개시되는 만큼 의료급여 선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절차를 수행해야 함에도, 의료급여 선정 지연으로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질병·부상 등 의료서비스 제공 시점 또한 늦춰지는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업무 소홀

가. 생계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급여 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급여 신청일'을 '급여 개시일'로 하여 생계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부터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전액 지급하고, 만일 수급자의 보장결정일이 급여자료 생성기준일인 매월 15일 이후이거나 계좌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생계급여가 신속히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자가 생계 곤란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여 「긴급복지지원법」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에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동시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결정전까지 우선 긴급지원이 가능하며.

추후 생계급여 신청자가 보장 결정되어 신청월 기준으로 기초 생계급여를 소급 지급하는 경우, 지급 예정 기초 생계급여와 기지급된 긴급 생계지원금의 월별 금액을 비교하여 당월 긴급 생계지원액이 기초 생계급여보다 많으면 긴급 지원금만 지급하고, 긴급지원금이 생계급여보다 적으면 차액분의 생계급여를 추가지급해야 하며, 만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법령·지침과 다르게 적용하는 등군·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가 있을 경우 군·구에서는이를 소급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구에서는 급여 지급에 앞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생성된 급여내역에 누락 된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 해당급여가 적기에 착오 없이 지급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추홀구 기초 및 긴급 생계지원 동시 신청자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기초 및 긴급 생계지원 동시 신청자 중 일부 지급 월의 급여 착오 계산, 소득인정액 산정 오류, 가구원수 변경 사항 미반영 사유로, *명의 생계급여 총 823,942원이 과소 혹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나. 장기입원자 주거급여(임차급여) 지급

「주거급여법」제1조, 제2조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급여법 시행령」제4조제4항,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9조제1항제1호, 「주거급여 사업안내(국토교통부)」에 따라 사용대차(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입원 중인경우에는 입원일을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추홀구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90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말아야 할 주거급여 (임차급여) 761,400원이 **. *월부터 **. *월까지 총 *회에 걸쳐 과다 지급되는 등급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가 이행되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고, 과다 지급된 생계급여 431.809원과 주거급여 761,400원은 회수, 과소 지급생계급여 392,133원에 대해 추가 지급 하시기 바라며,

향후 신청조사 부적정 및 사회보장급여 착오 지급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추 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기관경고

제 목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업무 소홀

기 과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미추홀구 ◆과에서는 등록장애인의 장애 상태 확인 등 재판정기한 도래자의 의무적 재판정 업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표1]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로부터 분기별로 통보되는 사항을 각 동에 안내 등 재판정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1] 기관별 장애 재판정 대상자 업무처리 개요

보건복지부, 인천시	군구	읍면동
▶ 분기별 재판정 기한 경과자 발췌, 차리촉구 - 분기별 장애 재판정 기한 경과자 처리 안내 (기 통보자 중 미처리자 및 직전분기 기한 경과자)	 ▼ 재판정기한 예정자 및 기한 경과자 진행상태 관리, 독려 ● 행정복자센터의 재판정 기한 경과자 부적정 처리 및 미처리 건에 대한 즉시 처리안내 촉구 ※ 처리내역 적정성 확인 (재판정 유예, 영구재판정 제외, 취소 등) 	 ▼ 재판정 예정자 행복e음 현황판 재판정 대상 확인 재판정 안내, 촉구 등 업무처리 철저 → 재판정 안내 누락에 대한 민원 발생 최소화 ▶ 기한 경과자 촉구서 통지에도 불응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실시, 장애인등록 취소 → 재판정 촉구 - 처분시전통지(청문실시통지) 청문실시(장애인등록 취소) - 등록증 반환통보등록증 반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등록 장애인의 장애 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재판정기한 3개월 전에 [별지제7호 서식]의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기한 내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판정기한 1개월 전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되, 다만,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거주불명 등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기간 등의 충족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해 재판정을 유예할 수 있으며,

재판정유예 대상이 아님에도 기한 내에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제27조에 근거하여 청문시작 10일 전까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인 10일 이상을 고려하여 우편 또는 교부 방법으로 송달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

만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호,제6호에 따라 우편물을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하며,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발송방법, 발송 연월일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청문실시 결과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청문결과 결정(장애인등록 취소)을 토대로「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반환 기한 2주 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 해야 하고, 반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아울러, 미추홀구에서는 「미추홀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 관련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통보,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 등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한 바, 사무를 위임받은 동장은 장애인 재판정 예정자 안내(통보)소홀, 재판정 기한 경과자 발생 및 기한 경과자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 등 부적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미추홀구 ◆과에서는 동장에게 위임된 장애인 재판정 업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착오 없이 수행되도록 재판정 예정자 및 기한 경과자에 대한 단계별 진행상태를 지속 관리·독려하고, 부적정 혹은 미처리 대상자에 대한 재조치 안내 및 처리내역 확인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의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관리현황 확인 결과, 재판정 (촉구)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사유 부적합자에 대한 담당자 직권 유예처리, 재판정 지연처리, 재판정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절차 미실시 등 장애 재판정 예정자 및 기한 경과자에 대한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미추홀구의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처리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판정기한이 도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적정 장애정도 유지, 재판정 안내 누락에 따른민원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해 재판정 기한 도래 사항을 적기에 통보해야 함에도, >동 외 *개 동에서는 재판정 기한이 도래한 *명에 대해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 또는 촉구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재판정 대상자 **명에게는 재판정 기한 도래 3개월 전에 1차 재판정 통보를 해야 함에도, 통보기준일로부터 1일에서 최대 *일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재판정 이행을 통보하였고, ▶동 외 *개 동에서는 *명에게 재판정 기한 1개월 전 해야할 촉구 통보를 통보기준일로부터 1일~*일 경과 시점에 시행하였다.

그리고, 장애 재판정 유예는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자에 한해 유예 할 수 있음에도, **명을 '병원예약 어려움, 보완서류 준비, 본인희망' 등 사유로 내부결재 없이 담당자가 직권으로 재판정 유예를 결정처리하였으며, *명은 2개월에서 1년까지 담당자 직권으로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이들의 경우 유예사유 조차 확인할수 없는 등 재판정 대상자의 유예 결정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재판정기한 경과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 장애등록취소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에도, △동 외 *개동에서는 재판정 기한 경과자 **명(재판정 기한 40일 이상 초과자 기준)에 대한 청문 및 장애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 없이 대상자가 재판정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 재판정 처리를하였는데, 특히 장애 재판정 기한일이 경과된 자에 대해 재판정 기한일로부터 *일~*일이 경과된 뒤늦은 시점에 재판정 처리되었으며,

*명에 대하여는 재판정기한일로부터 감사일(2023.7.6.기준)현재까지 *일에서 최대 *일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재판정은 물론, 처분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명의 장애인등록취소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동 등 *개 동에서는 대상자 **명의 재판정 기한일이 최대 *일 경과될 때까지 행정절차 이행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대상자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등록취소를 진행하였고, 취소절차 이행에 있어서도 *명의 경우 내부결재 없이 신청서로 갈음하

여 취소처리 하였으며, 대상자 일부는 감사자료 제출 시, 등록취소신청에 따른 취소처리자로 작성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애등록취소신청서 및 결재문서 전혀 없이 업무를 처리하였다.

아울러, 미추홀구 ◆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로부터 분기별 통보되고 있는 '재판정기한 경과자 처리안내'를 근거로, 전분기 기한 경과(미처리 포함) 대상자세부명단 통보 및 대상자별 이행내역, 조치결과 확인 등 재판정 관리를 해야하나, 각 동에 업무처리안내서와 동별 통계내역이 첨부된 처리요청 공문만 통보할 뿐, 통보 대상자에 대한 세부 조치결과 확인 등 업무처리 절차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 [시정] ① 장애인 재판정 기한이 경과된 *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등 업무처리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 ②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대상자에 대한 재판정·촉구 통보 등 일련의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경고]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업무에 소홀함이 있어 기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바,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조건제시유예자 선정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말하며, 만일,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가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의뢰에 불응하거나 자활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등 생계급여 지급조건 불이행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자활사업 안내」(이하 "관련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조건불이행자의 생계급여 지급을 중지토록 한다.

그리고, 군수·구청장은 관련 지침에 따라 군·구 담당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예외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단기간 유보할 수 있는 조건제시유예자로 결정한다.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제시유예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2개월이하 영아 양육에 따른 근로 곤란 수급자,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인 자, 외국인수급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자,만 20세 미만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생 및 만 20세 미만의 검정고시 출신의수시시험 응시 등 시험준비생, 20세 이상 초중고 재학생 및 휴학생, 취업준비생,실업급여 수급자,월 소득이 60만원(23.90만원) 이하이거나 기타 여건을 고려해 현재의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관련 지침에서는 조건제시유예 대상자별 세부 선정기준 및 제출(증빙) 서류, 유예 적용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군수·구청장이 조건제시유예 대상자로 결정하는 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정신질환, 알콜 중독 등이 의심되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로,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두 번째 대상자는 단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1회 최대 3개월, 연 2회까지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 가능하나, 다만 이 경우에는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소견서 중 하나를 제출 하되, 진단서의 경우 치료(예상)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병명, 치료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활동 및 근로가능 여부, 치료(예상)기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조건제시유예 세 번째 기준은 계절적으로 질병 악화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진단서가 아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고, 위 세 가지기준에 따른 조건제시유예자 선정을 위해서는 각각의 증빙서류와 함께 '사실확인조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로 1일 8시간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들 모두를 자활사업 참여 유보자로 결정하기보다는, 개인·가구별 여건을 고려해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로의 배치가 가능한 바, 건강상 사유 종료 시점까지 치료를 병행하며 시간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것을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군수·구청장은 조건제시유예자 선정 시, 유예 결정을 뒷받침할 증빙서류의 세부내역에 대한 군·구 담당자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검토절차를 통해 도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단기간 유보하는 등 조건제시유예자 선정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 결정 처리한 질병·부상 등 사유에 따른 조건제시유 예자 선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담당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건에 한해 적용되어야 할 조건제시유예가 담당자 직권으로 결정처리 되거나, 제시유예기준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 소홀, 사실확인 조사서 미작성, 유예기간 결정 부적정 등 조건제시유예자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미추홀구 ◎과의 조건제시유예자 선정에 따른 부적정 처리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건제시유예자는 군·구 담당자의 확인·조사사항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기안·검토·협조·결재 등 처리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명(총 **건)을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 시, 전자문서로의 기안, 검토, 결재 과정 없이 담당자 직권으로 결정처리 하였으며, 이들 중 *명은 20**년부터 *년

간 각각 *회, *명은 20**년부터 *년간 각각 *회에 걸쳐 내부결재 없이 담당자 직 권으로 유예결정 처리하였다.

그리고, 직권 처리된 **건 중 **건은 진단서·소견서 상 치료(예상)기간이약 1·2주~2개월간 치료를 요함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출서류에 기록된 기간을 상회하는 *개월로 일괄 적용하여 결정하였고, 3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건에대하여는 *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특히, *회에 걸쳐 유예 결정된 AG의 경우에는 20**년과 20**년에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20**. *. *.에 진단된 소견서를 발행일만 달리하여 제출하였고, 제출된 소견서 상 활동 및 근로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음에도 **. *월과 **. *월에 *개월씩 제시유예 기간을 직권결정 처리하였으며, 대상자 AH, AI의 경우에는 제출된 진단서의 진단일이 발급일(조건제시유예시작일)로부터 3개월, 15개월 전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해당자료를 근거로 발급일로부터 *일에서 *개월간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다.

또한, 조건제시유예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는 제시유예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바, 증빙서류로 제출된 소견서에 병명, 치료내용은 물론, 치료(예상)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과 활동 및 근로가능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업무 담당자는 이를 확인해 선정기준에 부합될 경우 제시유예자로 결정해야 하나, *건의 소견서 세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치료(예상)기간, 활동 및 근로 가능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5주~3개월간 조건부수급자의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도록 결정처리 하였다.

아울러, 조건제시유예자 결정을 위해서는 각 증빙서류와 함께 사실확인조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나, 유예 결정된 *건은 사실확인조사서 없이 처리되었으며, 사실확인조사서가 작성된 *건의 경우에는 진단서(소견서)에 명시되어야 할 치료예상기간이 누락 되었음에도, 조사내용에 '주상병, 의료기관명'외에, 유예기간 결정 근거 등에 대한 별다른 기록 없이 유예 사유는 '진단서(소견서) 제출', 유예기간은 '5주~3개월'으로 결정한 사항만으로 작성되었고, 조사결과 상에는 '질병·부상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여 조건제시유예자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 모두 동일하게 작성되는 등 제시유예 기준적합 여부를 결정짓는 제출서류 검토, 이를 근거로 한 사실확인조사서 작성 및조사결과에 따른 제시유예자 선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① 조건제시유예 기준 조사 시점에 진단·확인됨을 증빙하는 제출서류와 사실확인조사서를 토대로 조건제시유예 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교육·문화·체육 분야 사무 민간위탁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①과외 2개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실에서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¹³⁾,「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등에 따라 미추홀구의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①과, ▲과, ■과에서는 교육·문화·체육 분야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 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1.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사무처리지침 관리 소홀

「행정위임위탁규정」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제15조에 따라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¹³⁾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조례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사무편람을 마련하여 수탁 기관에 제공하거나,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한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승인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①과 등 3개 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총 *개 기관 중 *개 기관에 민간 위탁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지 않거나,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사무편람을 검토 후 승인하여 관리하지 않는 등 수탁기관의 적절한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리지침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소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제2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해야 한다.

아울러, 제6조제3항제9호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의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와 ■과에서는 [표3]과 같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총 *개 기관의 사무에 대한 성과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부서 내부의검토 자료를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로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과와 ■과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을 위한 의회 동의안 자료에 객관적인 성과평가 자료가 아닌 부서 내부의 검토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①과, ▲과, ■과에서는 사무처리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수탁기관에 민간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거나, 수탁기관이 사무 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 관리하시고,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행정위임위탁규정」,「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민간 위탁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후계·시정 요구

제 목 ★★센터 운영 및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①과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20**. *. 개관된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20**. *. *.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뿌리깊은나무에 센터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1. 수탁기관의 보조사업 수행상황 미보고 및 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제16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협약서 제11조에 따라 수탁자는 분기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지방보조금법」제17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5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가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울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구청 장은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5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 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⑤과에서는 매 분기마다 센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실적을 제출받고, 매년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센터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했지만, 20**년 *월 센터의 민간위탁관리 시작일로부터 20**년 *월까지 센터로부터 분기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았고, 20**년도 회계연도종료 후에는 센터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년도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20** 년도의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교부하는 등 센터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 업무를 미이행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미실시

「행정위임위탁규정」제16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대하

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⑤과에서는 20**년도와 20**년도에 관련 법규에 따른 센터의 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20**년 *월에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의 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급하여 실시하였다.

20**년 *월에 20**년 *월부터 센터의 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출 증빙서류 부적정, 이자 및 포인트 관리 부적정, 강사료 지급 부적정, 물품관리대장 미보유, 근태관리미흡 및 출근기록부 미작성, 프로그램 운영일지 미작성. 센터 운영에 대한 내부결재 공문 미작성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다수의 심각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다.

①과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을 이행하였다면, 20**년과 20**년에 센터 운영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의 처분을 함으로써 센터가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음에도, ①과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신규위탁된 센터의 사무가 체계적이고 적법하게 운영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수강료 세입 처리 및 규칙 미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8조에 따르면 수강신청자에게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고, 제13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협약서 제9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징수한 사용료는 위탁자에게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⑤과에서는 2017. 8. 7.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감사기간 현재까지 조례 제13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수강료 징수 및 반환, 강사의자격, 시설 사용허가 등의 사항을 정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센터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①과는 센터에서 관련 규칙에 따른 투명한 기준 없이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부과·감면·반환하거나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고, 강사를 채용하여 강의료를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협약서 제9조에 따르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용료 등은 위탁자의 승인을 얻은 후 징수하여야 하며, 제11조에 따르면 위탁 자가 지급한 예산에 대하여 분기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0일 이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센터에서는 관리·감독부서인 ①과의 승인 없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강료를 징수하였고, 20**년부터 20**년 *분기까지는 보조금으로 센터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입금에 대해 매 분기마다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수입금의 내역에 대한 공문을 따로 시행하지 않고부서 계좌에 수입금을 입금하였고, 평생학습과에서는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에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금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세입 조치함으로써센터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센터의 영업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협약서 제14조에 따라 센터는 사업과 관련된 사고 발생에 따른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과에서는 20**. *. *. 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20**. *. *.까지 센터로부터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제출받아야 했음에도 이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보험 가입 재안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센터에서는 센터 개소 후 2개월이 경과한 20**. *. *.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①과는 책임보험 가입이 센터 특성상 우려되는 이용자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위·수탁 개시일인 20**. *. *.부터 20**. *. *.까지 *개월 넘게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센터가 운영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시기 바라며, 수탁기관이 관계 법 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노래연습장업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과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음악산업법)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에 따라 관내 노래연습장업 총 *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 관리

「음악산업법」제1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조례 제4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에서는 매년 「(사)육육」(이하 "육육"라 한다)에 위탁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에 대한 신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위탁의 재협약과 관련하여 미추홀구와 육육에서 체결한 「2021년 노래 연습장업자의 교육 위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제4조에서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해 30일 전까지 위탁을 재협약해야 하며, 협약 전에 위탁교육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에서는 20**.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융융와 재협약을 체결하며 위탁 만료 30일 전까지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협약서에 체결 일자를 '20**년 *월 일' 등으로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과에서는 협약서 제4조에 협약 기간의 소급적용을 명시하여 위탁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 중에 ���에서 실시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보조금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용용의 교육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협약서 제8조에서는 '을은 갑에게 위탁교육에 따른 제반 업무를 매월 말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월 말 ♣육로부터 위탁 교육에 따른 제반 업무를 보고 받아야하지만, ▲과에서는 20**.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육로부터 한 차례도 업무보고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업무보고 제출을 ♣육에 요구하지도 않았다.

2.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는 음악산 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제7조제1항 및「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5조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법」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는 '(사)&&'와 체결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 협약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인 ���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에 교부하여야 했지만, ��� 대표자 개인 명의 통장 계좌에 교부하였고 ���에서 당초 보조금 교부 계획서에 제출했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와 혼용하여 통장을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과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음에 도 ���에서 '교육관 기타운영을 위한 사무용품구입비'등 운영비를 포함하여 제 출한 보조금 교부 신청 내역을 승인하여 교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에서 보 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르면 지방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 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제2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5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 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산을 소홀히 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통장사본만을 증빙서류로 제출받아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사용내역 확인 없이 정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년도에는 정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산을 소홀히 하였다.

3.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8조에 따라 교육강사는 강사의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20**.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에서 실시한 노래 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해 교육계획을 제출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조례에 따 른 교육 강사의 자격 적정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과는 20**.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결과를 육육로부터 보고받지 않았으며, 20**년에는 부서 내부 결과보고도 누락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문화유통산업 관련 과징금 관리 및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과에서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및「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음악산업법)」등에 따라 미추홀구 관내 PC방 등 게임산업 관련업소 총 *개소, 노래연습장 등 음악산업 관련업소 총 *개소 등에 대한 과징금 및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문화유통산업 관련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게임산업법」제3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음악산업법」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문화유통산업 관련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산업에 관련된 사항에 사용하여야함에도 전년도 과징금 부과액을 반영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여 20**년도에는 부과액보다 과소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년도와 20**년도에는 부과액보다 과다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년도에는 음악산업 과징금을 사용하며 관련 부과액 총 *천 원을 초과한 총 *천 원을 사용함으로써 게임사업 과징금 *천 원을 게임산업법 제36조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인 음악산업 관련 용도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과에서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20**년도와 20**년도에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 기한을 지연하여 20**. *. *.과 20**. *. *.에 수립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과징금 부과액 및 집행 계획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문화유통산업 과징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문화유통산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노래연습장업자가「음악산업법」제2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목에 따라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고, 이 경우는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음악산업진흥업무 매뉴얼(2017. 6.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별표 2]가목

중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재량행위로 보이지만 법의 실효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속재량행위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에서는 이를 적용 시 일관되게 가중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래연습장사업자가 [표2]와 같이 접대부 고용·알선(1차) 및 주류판매·제공(1차)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별표2]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중무거운 처분기준인 접대부 고용·알선(1차) 30일에 따르고 30일의 2분의 1을가중하면 45일을 처분하여야 하지만, 이는 두 위반행위의 합(30일+10일)보다 크므로 영업정지 40일을 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별표 2]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임의로 해석하여 주류판 매·제공(1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1차) 위반에 대하여 총 *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영업정지 40일이 아닌 영업정지 30일을 처분하였다.

또한,「음악산업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 령이 정하는 중요사항¹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라 과태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가 객실증설에 대한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이 아닌 1차 경고 처분을 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였다.

^{14)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영업소 면적 및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노래연습장업에 한정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문화유통산업 과징금 관리, 행정처분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와 같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문화재 현상변경 완료 신고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과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등에 따라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업무, 현상변경 행위 시 착수 및 완료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2항, 조례 제18조제1항제8호 및 시행규칙 제17조제7호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제10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2. 개별기준 바목에 따라 1차 위반은 150만 원, 2차 위반은 20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 기한 내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착수 및 완료신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수리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과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이 실제 현상변경을 완료하였으나 15일 이내에 완료 신고서총 *건을 접수 받지 않았으며,

현상변경 신고 후 완료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은 현상변경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미신고 여부를 파악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 '문화재 현상변경 착공 신고 및 준공 처리 알림 협조 요청' 등을 통해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신고 누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체육시설업 손해보험 가입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과에서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칭:체육시설법)」등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체육시설업 손해보험 가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체육시설법」제26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¹⁵⁾를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¹⁶⁾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체육시설법」제30조제8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7조제2항 및 [별표 7]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15)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제25조(보험 가입)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제25조(보험 가입)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 정지 3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체육시설법」제40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25만 원, 2차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보험 가입대상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을 신규 또는 변경 신고하였을 경우 10일 이내에 보험 가입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손해보험 가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및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체육시설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 체육부령17)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관광체육부령¹⁸⁾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17)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이하 "휴、폐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업(폐업) 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수영장업만 해당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에서는 손해보험 미가입 체육시설이 휴업 또는 폐업으로 확인될 경우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ㆍ폐업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에서는 20**.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신고 체육시설업 *개소 중 *개소에 대해 보험기간 만료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손해보험 미가입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별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보험 미가입 신고 체육시설의 확인을 통한 휴·폐업 처리 등의 조치도 이행되지 못하는 등 신고 체육시설업 손해보험 가입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손해보험 미가입 신고 체육시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또는 현장 실사를 통한 휴·폐업 처리 등의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시설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 손해보험 가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미술품 보관 및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1조 및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 재산법의 일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미술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과에서는「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IV 지방 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기준에 따라 한국화, 서양화, 사진, 공예품 등 총 *개의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다.

1. 미술품 수요조사 및 예산 반영, 관리 실태 점검 미 실시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기준」1. 미술품 관리 개요 다. 취득에 따르면 ▲과의 물품관리관은 매년 미술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아. 관리실태 점검 등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미술품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20**년과 20**년에는 미술품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시행하여야 하는 미술품 수요 조사 및 예산 반영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20**년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 관리실 태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은 이행하였으나,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미술품 관리대장을 정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미이행하는 등 미술품의 총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미술품 구매 절차 미 이행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기준 1. 미술품 관리 개요 다. 취득에 따라 미술품을 구매할 때 물품관리관은 매년 미술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구매 요청하여야 하며, 예산을 초과하여 구매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에서는 미술품 총 *점, 총 **천 원의 구매에 대해 미추홀구의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구매 요청을 하여 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여야 했다.

그러나, ▲과에서는 20**년 *월과 *월에 한국화, 서예, 사진 등의 미술품을 구매하며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구매 요청하여 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지 않고, ▲과의 미술품 관리 담당자가 일반지출의 방법으로 구매하였으며,

20**년 *월에 구매한 사진 총 *점 총 **천 원에 대해서는 가격확인서나 미술품 관련 위원회의 검토 등 미술품 단가에 대한 산출 근거 없이 ▲과에서 임의로 1점당 *만 원의 가격을 적용하여 구매하는 등 미술품의 구매 관련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 관리기준」에 따라 미술품 보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1. 의료기관 휴·폐업 관리 소홀

「의료법」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에 따라 구청장은 의료업

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하고 휴·폐업 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에 따르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개시예정일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20**. *월 ~ 20**. *월까지 총 *건의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를 처리하면서 *개소에 대해서는 휴업연장 신고 시 안내문 게시여부를 미확인 하였으며, *개소에 대해서는 휴·폐업안내문 게시내용 중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등 일부가 누락되어 게시되었음에도 의료법 제40조제5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 없이 휴·폐업 신고를 처리하는 등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존 절차이행 소홀

「의료법」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진료기록부)나 제23조(전자의무기록)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관할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각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과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인 20**. *월 ~ 20**. *월에 총 *건의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처리와 **건의 진료기록부 자체 보관을 허가하였다.

◇과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최대 10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는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관리 를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한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첨부된 서류의 적 정성을 검토한 후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는 '◎◎병원' 등 **개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를 휴·폐업일 당일 휴·폐업신고서의 붙임 서류로 신고서와 같이 제출받고 처리함에 따라 진료기록 보관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없이 허가함으로써 진료기록부등의 기록·보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빠짐 없이 확인하시기 바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자체 보관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처리 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¹⁹⁾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관청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변질·부패 또는 파손,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고, 폐기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해당 폐기처분대상 마약류가

바. 마약류관리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¹⁹⁾ 마약류관리법 제2조(정의) 제5호: "마약류취급자"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라. 대마재배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확인한 후이를 [표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분해야 한다.

[표1]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 2.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땅속에 파묻거나, 해수면 위에 떠오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거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같은 법 제15조(마약류의 저장)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 하는 경우,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 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마약류의 저장)에 따라 마약류 저장장소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안에 있어야 하고,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고,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를 포함한다)에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교육·홍보자료로 게시된「폐기 보고 및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안내 가이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폐기는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표2]의 예시(다른 방법도 가능)를 참고하여 취급자 조건과 환경에 따라 폐기 방법을 선택하고, 이후 폐기물은 의약품폐기물 버리는 방식에 따라 폐기한다고 되어 있다.

[표2] 폐기방법 예시(폐기보고 및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안내 가이드)

제형 구분	예 시
주사제	■ 앰플이나 바이알에 물이나 다른 액체를 넣어 희석
	■ 마약류에 잉크나 베타딘을 떨어뜨려 마약류 아닌 것으로 변화
	■ 고무마개가 있는 바이알은 마약류를 꺼내서 다른 폐기물과 섞어 버리거나
	주사기로 물을 넣어 희석하여 의료폐기물 상자에 버려야 함
경구제	■ 물이나 다른 액체를 넣어 희석
	■ 잉크나 베타딘을 떨어뜨려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

※ 자료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자료 재구성

미추홀구 ◇과에서는 20**. *월~ 20**. *월까지 마약류취급자로부터 총 *건의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을 받아 폐기 처리하였으며, 마약류의 폐기 시에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에 따라 적정한 폐기방법을 선택하여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켜 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처리하면서 마약 패치류 및 주사 제 등 *건을 중화·희석 등의 과정없이 단순절단 또는 원형그대로 지퍼백에 넣어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의료폐기물 처리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마약류 폐기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켜 폐기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축산물 위생검사(점검) 및 교육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①과

내 용

1. 축산물 위생검사(점검) 및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소홀

미추홀구 ①과에서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의 영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및 제24조(영업의 신고)에 따라 영업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축산물 영업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영업장²⁰⁾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 또는제2항에 따라 조사·평가한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

²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는 그 처분·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 통보 등)에 따르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27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①파에서 20**년부터 20**년까지 실시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의 연간 위생검사(점검)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연 1회 이상 위생검사를 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업장만 점검하는 등 위생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①과는 20**년에 행정처분을 한 영업장 *개소에 대하여 처분일부터 6 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위생검사(점검)를 실시하였어야 하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 았으며, 행정처분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관리 소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제7항에 따라 구청장은 영업자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0조(위생교육)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27조·제28조 또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²¹⁾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7조(과태료)제4항제2호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로서 그 영업을 한 자에게는 과태료 최대 60만원을 구청장은 부과하여야 하며.

²¹⁾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11]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 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①과는 20** ~ 20**년도 위생교육 미수료 *건에 대하여 과 대료 및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20**년에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교육 미수료내역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영업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전수점검 및 20**년도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시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② 20**년도 위생교육 미수료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조치하시고, 현지확인 결과 과태료 처분 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행정처분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제6조(영업의신고 등)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에 필요한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4]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표4] 제3호자목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규정되어 있다.

[별표4] 제3호자목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금지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시정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별표9]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7조(과태료)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36조(과태료 부과금액기준) [별표12]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행정처분대장 등)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을 작성·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사항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영업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7]에 따라 행정처분 하여야 한다.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Ⅱ.개별기준, 3.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이버儿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 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같은 법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미추홀구 ◈과에서는 20**. *월 ~ 20**. *월까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이 중 *개소는「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위반으로 *개소는「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으로 적발하여행정처분하였다.

◈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건강기능식품법」제29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하였어야 하며,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업소는 2021년 5월 27일 개정 시행된「식품표시광고법」제16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과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시정명령만 행정처분하고 과대료 100만원 병과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업소는 개정 시행 된 행정처분 규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 7일을 처분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건강기능식품법의 행정처분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계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 및 업소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와「건강기능식품법」제32조(영업허가 취소 등)에 따라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시간)에 따라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을, 「건강기능식품법」 제13조(교육)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교육시간)에 따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제101조(과태료)제4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자와「건강기능식품법」제47조(과태료)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 최대 60만원을 구청장은 부과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행정처분대장 등)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은 법제71조, 법제72조, 법제74조부터 법제76조까지, 법제79조 및 법제8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제6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영업 등록을 취소한 경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생년월일, 취소 또는 폐쇄 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 등을 구청 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20** ~ 20**년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자로 통보된 *건 중 *건만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영 업장 확인을 통해 폐업·멸실 여부 및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수료 여부를 재차 확인 후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 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과태료 처분이 불가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소 패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위생교육 미수료 *건에 대하여 아무런조치를 하지 않는 등 영업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20**년도 위생교육 미수료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하시고, 현지확인 결과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보행안전시설(핸드레일) 설계 및 구매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미추홀구(ᡣ과)에서는 보행안전에 취약한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20**년 *건, 20**년 *건 디자인형 울타리(핸드레일)을 구매하여 설치하였다.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계약에 관계된 담당자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법령, 그 밖의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에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²²⁾으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

^{2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1관 통칙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ᡣ과)에서는 보행안전을 위한 디자인형 울타리 (핸드레일)를 설치하는 경우 현장에 따른 제반사정에 적합한 규격과 소요물량을 산정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ᡣ과)에서 20**년 *월에 손잡이가 양면형인 디자인형 울타리 **m를 설치도 조건의 조달계약물품으로 계약하여 납품받았으나 **m중 **m는 양면형 손잡이에서 손잡이 한면을 설치하지 않은 한면형으로 설치하였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ᡣ과)는 규정에 따라 제반사정에 적합하게 손잡이가 한면형 물품과 양면형 물품으로 구분 산정하여 구매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모두 양면형으로 발주요청하여 필요이상의 규격을 설치하므로써 동일회사의 한 면형 핸드레일 제품을 구매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약 **원의 예산을 낭 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설계물량과 현장설치 물량이 상이한 경우 재산정하여 물량변동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20**년 *월과 20**년 *월에 계약한 디자인형 울타리는 현장설치 물량이 상이함에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설계 및 원가계산시 물량산정과 계약이행 업무 추진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경관조명기구 조달구매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ᡣ과)는 「ㄱ시장 주변 특색가로등 설치공사」를 시행하며 특색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20**년 *월 꽃과 나비 디자인의 LED경관조명기구 *개 **천원을 조달청으로 계약요청하여 구매하였다.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계약에 관계된 담당자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법령, 그 밖의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계약의 방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따라 계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이 제3자 단가계약을 한 물

품을 수요기관이 구매할 경우에는 입찰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에 따라 수요기관 및 제3자 단가계약 업체는 조달청과의 제3자 단가계약 계약조건에 위반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 단가계약물 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ᡣ과)에서는 「ㄱ시장 주변 특색가로등 설치공사」를 시행하며 꽃과 나비, 별동별 디자인의 경관조명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꽃 과 나비 디자인의 경관조명은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물품으로 구매가 가능하였 으나 별동별 디자인은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이 되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ᡣ과)는 특색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개 **천원의 경관조명기구 중 조달청의 단가계약물품인 꽃과 나비 디자인의 물품 *개 **천원은 조달청의 단가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단가계약물품이 아닌 별동별 디자인의 물품 *개 **천원은 일반입찰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鬪과)는 꽃과 나비 디자인으로 조달계약된 물품의 외형만 별동별로 변경하여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여 별동별 디자인물품을 꽃과 나비 디자인의 물품으로 설계하여 조달청의 제3자 단가계약 물품으로구매하였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ᡣ과)는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이 아닌 ☆☆(주)의 일반물품²³⁾인 별동별 디자인의 경관조명기

구를 *개 **천원을 구매하여 설치하였다.

인천광역시 미추홀(ᡣ과)는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이 아닌 일반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제3자 단가계약 제도를 이용하여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물품을 구매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관급자재 설계 및 구매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²³⁾ 조달청「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익 확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 8. "일반제품"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세부품명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요구·기관경고

제 목 시장현대화사업 물품 구매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관계부서 ①과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기능별로 성질별 분류에 따라 명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 조에 의거 법령, 그 밖의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계약관련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²⁴⁾으로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입찰공고나 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규격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라 입찰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가격으로 결정하되 이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5)에 견적가격은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2. 관계사실

시장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①과)는 20**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ㄱ시장 노후도로 포장공사를 **천원(시비 80%, 구비 20%)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물량

^{2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1절 7호 나항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

²⁵⁾ 제2장 예장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칙

변경과 공법변경으로 집행잔액이 **천원 발생하자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집행 잔액으로 기시장 비둘기 레이저퇴치시스템 구매설치사업을 **천원에 시행하였다.

가. 불필요한 입찰참가 자격 지정 및 특정규격 물품 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⑩과)는 시장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하고자 ㄱ시장 상인회와 협의하며 비둘기 퇴치를 위한 레이저시스템 설치를 요청하는 상인회장의 요구에 따라 레이저시스템을 설치한 ○○군에 문의하여 ○○군에 공급한 업체인 ㈜¥¥의 레이저조류퇴치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에서 공급하는 레이저조류퇴치기는 네덜란드의 ※※사의 제품으로 ㈜¥¥에서 국내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⑩과)는 공고시 특정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특정규격을 지정하여 입찰하거나 계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ㄱ시장내 조류퇴치기 설치장소의 반경이 3~4m정도에 불과함에도 사거리가 2,366m인 네덜란드 ****사의 특정제품에 대한 물품구매시방서를 ㈜¥¥으로부터 제공받아 특정규격을입찰하여 계약하였다.

또한, 공고시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자격요건 등으로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공고시 물품공급계약과는 관련이 없는 '레이저 기기를 활용한 조류퇴치' ISO 9001:2005²⁶⁾ 인증을 받은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여 공고하였다.

그 결과 입찰에 *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나 입찰결과 적격심사 1순위로 낙찰된

²⁶⁾ 품질경영시스템 : 고객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의 적합성을 제3자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인증 받는 제도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규격 인증

㈜∠∠에서는 이 규격 제품이 특정제조사(네덜란드 ※※사)로부터 국내 공급을 규제하고 있어 물품을 공급할 수 없기에 적격심사를 포기²⁷⁾하게 되었고 국내 공급원을 가지고 있는 2순위 낙찰자인 ㈜¥¥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부당한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⑪과)는 레이저 조류퇴치기를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견적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⑩과)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과 §§시스템으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 ㈜¥¥에서 제출한 가격이 다른 업체의 견적금액보다 낮아 **천원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입찰을 하였다.

그러나 비교 견적으로 받은 §§시스템은 ㈜¥¥의 임원인 감사 AJ가 설립한회사이며 견적서에도 대표자 명의가 AI이사로 표기되어 있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⑩과)는 ㈜¥¥이 부당하게 예정가격이 산정되도록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 ¥¥에서 제출한 견적서 및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확인하지 않고 예정가격을 산 정하였다.

또한, ㈜¥¥에서 공급하는 물품은 국외(네덜란드)에서 제조되어 공급되는 물품으로 수입면장의 확인 등을 통하여 ㈜¥¥ 또는 다른 업체의 견적가격의 적 정성을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예정가격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의 수입면장에서 확인된 1대당 ***EUR(***천원, 세액제외

^{27) ㈜ ∠ ∠} 유선통화(2023.8.14.16:00) : 미추홀구에서 ㈜¥¥ 특정제품의 납품을 요구, ㈜¥¥에 물품공급 요청을 하 였으나 높은 금액을 요청

물품가액)의 물품을 1대당 **천원(세액제외 공급가액)에 구매하게 되었으며 총 *대를 구매하여 총 **천원(세액 제외)의 수입 물품을 **천원(세액 제외, 설치비 등은 포함)에 계약하여 구매하였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⑩과)는 특정업체의 특정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방계약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규격 특정물품의 입찰, 과도한 자격설정과 예정가격 작성시 직접 제3자로부터 견적제출을 위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3. 관계기관 의견

조류퇴치 관련 레이저 시스템은 특수제품임을 감안하면 특정업체 특정물품을 구입하기 위함이 아니며 견적가격에는 수입면장 수입가격 이외에 기타 부대비용 등이 추가되어 있고 견적에 따른 구입은 일상감사 의뢰를 거쳐 조정이 있었던 사항, 그리고 해당 전통시장이 오랜기간 비둘기로 인해 피해민원이 있어 시행하게된 사례로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항임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의견에 대한 판단

특수제품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부당한 방법으로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견적가격에서 부대비용 등의 금액은**천원으로 조류기피제를 제외한 레이저조류퇴치기의 입찰가격인 **천원 금액의 일부분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기관경고]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지방공무원」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실무담당자는 의원면직, 감독책임자는 퇴직하였기에 기관경고하오니 특정업체 특정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입찰하거나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유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라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즉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지적 현황, 주위 환경, 이용 현황,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련 부서(공공시설혁신담당관)에 제출하고 있다.

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육과)은 매년 소관 공유 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조에 따르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 조례 별표1「구 본청 전결처리사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는 담당국장(♠국장) 전결로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를 담당국장(▲국장)이 아닌 &과장 결재만을 받고 시에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향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시 담당국장인 문화경제국장 결재를 득하시기 바라며,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공유재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업무처리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외 2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과 외 2개과는 공유재산의 관리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 등이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제회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주의 의무) 및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으며,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며 투명하고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또는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미추홀구는 공유재산으로 건물, 선박 또는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의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로부터 발생되는 배상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대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 외 2개과는 취득일 기준 최장 20**. *. *, 최단 20**. *. *부터 현재까지 건물, 선박 또는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해 손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나 *개소의 건물에 대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미추홀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관내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손해보험이나 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발생시 복구비용 등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미가입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등 적의 조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 계약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사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하고,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²⁸⁾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등 1호부터 24호까지 수의의 근거가 열거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3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되어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인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공공가치 및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미추홀구 ○○동 **번지 **m² 면적에 대하여 *일간 폐기물수거운반차량 임시보관 목적으로 ㈜◆◆이 2022. 5. 18. 사용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수의로 사용허가 가능한 공법인 또는 공익 법인으로 오인하여

^{28)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법인 ·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 24.} 생략

같은 날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내부결재를 받고 같은 날 사용료 납부 안내 공문을 기안하였다. 미추홀구는 사용·수익허가 신청 된 사항에 대하여 제20조제2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정 하고 있는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수 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①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 가능 여부를 엄밀히 검토하시어 업무 처리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과 계 부 서 ▦과 외 6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과 외 6개 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제3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지적 현황, 이용 현황 및 그 밖에 재산의 보존·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 조사한 후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鬪과 외 6개 과는 공유재산을 취득(신축)하여 해당 재산이 지방자 치단체에 속하게 된 경우 토지 및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고,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에 등기 하여 권리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등기 여부 등을 파악한 후 누락 및 변동사항을 관련 공부 에 반영하여야 했다.

그러나 미추홀구 ᡣ과 외 6개 과는 매입, 기부채납, 무상귀속의 방법 등으로 취득하고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 *개소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 권리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미등기 되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등기 촉탁 등 적의 절차를 통하여 권리 보전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등기 등 권리 보전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통 보

제 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조치 미흡

기 과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Δ 과는 공유재산인 ' ∂ ∂ '에 대한 관리 위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 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 및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수탁기관의 선정)을 종합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추홀구 ▲과는 공유재산인 '∂∂'에 대하여 '▽▽'과 20**. *. *부터 20**.

*. *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수탁자인「▽▽」과의 위탁기간이 20**. *. *. 만료됨에 따라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 *.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결과 재계약 부결로 결의되었다. 하지만「▽▽」은 심의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하였고 ▲과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적정'으로 내부결재를 득한 후 그 결과를 20**. *. *. 수탁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수탁자는 위탁 기간 만료일 이후 감사기간 동안까지도 무단점유하고 있다.

「공유재산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따르면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는 해당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변상금 부과는 해당 재산의사용료나 대부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변상금의 체납시 강제적으로 징수토록 하고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즉시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무단사용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변상금이부과된다는 사실 고지 및 원상회복 조치를 촉구하도록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통보] 사전통지 등 변상금 부과조치 관련 절차를 적의 처리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른 원상복구나 시설물 철거, 동법 제99조에 따른 불법행위 제재를 위한 고발 등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사용협약 및 기술사용료 반영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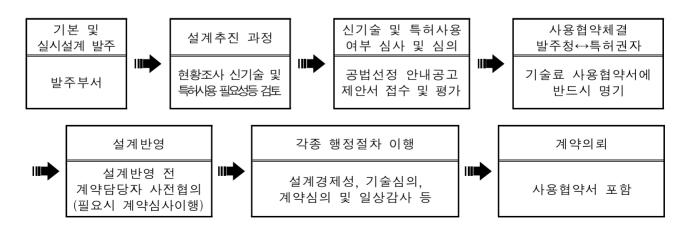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특허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 협약자는 제외)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찰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의 <참고>와 같다.

[참고] 신기술 및 특허적용 절차





그리고 발주부서는 기술보유자와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발주 전에 기술 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해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 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를 해야 하며,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이 경우 기술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7.계약 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 기술사용요율 미정 및 기술사용료 미계상

미추홀구 ▦과에서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신기술·특허 공법을 적용한 공사 현황은 [붙임]과 같고 이번 감사기간 중 기술사용협약서를 확인한 결과 총 *건 중 *건은 기술사용료 요율이 0% 이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동 • •다리 주변 외 1개소 ●● 정비공사와 ⊠⊠동 일원 노후 ●● 정비공사 *건은 기술사용협 약서를 확인할 수 없어 기술사용료 요율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총 *건의 공사 설계에 신기술·특허 공법을 반영하였음에도 *건은 설계내역서에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은 기술보유자가하도급을 참여해 기술사용료를 미지급대상이나 '○○동 • 다리 주변 외1개소 ●● 정비공사'는 원도급자(◎◎)가 시공하였음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발주기관인 미추홀구는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에 기술사용료와 하도급 부분을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 시 명확히 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며 기술 사용료 등을 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부담을 낙찰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시 기술사용료 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기술보유자로부터 해당 기술을 제공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며 기술보유자의 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로 하여금 하도급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술사용료가 설계에 계상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신기

2. 기술사용협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의 제안 참여자는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공법의 보유자를 말하며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에 따르면 특허공법을 이유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때에 「특허법」상 특허권은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등 제3자에 대한 권리승계가 인정되어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의 범위에는 해당 특허권자뿐만 아니라전용 및 통상실시권자도 포함(계약제도과-704, '12.06.07)된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면 특허공법 보유자의 범위와 기술사용협약 체결 대상자는 [표1]과같고 지방계약의 경우 통상실시권자는 기술사용협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1] 특허공법 보유자의 범위 및 기술사용협약 체결 대상

구분	개념(특허권)	실시권자	기술사용협약 체결 대상		
특허권	특정공법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전용 실시권자가 그 특허공법을 실시 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 러지 아니함	특허권자 (전용·통상 실시권 미설정 시)	특허권자		
전 용 실시권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공법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톡점	전용실시권자 (전용실시권 설정시)	전용실시권자 (특허권자 협약체결 불요)		
통 상	통상실시권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권자,	특허권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실시권	특허공법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이러한 권리를 독점 적으로 행사하지는 못함	통상실시권자 (통상실시권 설정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통상실시권 자와 별도 사용협약을 체결할 필요 없음. 다만, 통상실시권자와 협약 체결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약 체결시 반드시 권리권자의 동의 필요 ※지방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통상실시권자는 협약 체결대상에서 제외
-----	--	--------------------------	---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초교사거리 일원 ⊙⊙ 정비공사'관련 균일 팽창이 가능한 패커를 구비하는 하구관로 부분보수 장치(특허 제*-**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추홀구청과 ДД(주)은 특허사용협약(20**년 *월)하고 공사계약을 20**. *. *. 체결하였다.

특허 제*-**호)의 등록사항에 🛛 🖺 (주)는 특허권리권자인 **卷卷**(주)과 20**. *. *. *. 부터 20**. *. *.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만 20**. *. *. 등록하였다.

그러나 미추홀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하여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주)과 기술사용협약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신기술·특허공법 등을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통상실시 권자와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와 기술사용료를 반드시 명기하여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관급자재 설계 및 구매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1. 특정업체·특정규격 설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 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유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특정규격·특정모델명과 물품식별번호와 업체명

을 설계내역서 명시하고 시방서에 특정제품 모델명이나 우수조달제품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계약의뢰를 하였다.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검토 미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 계약)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제3조 (2단계경쟁 대상) 및 제5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제6조(2단계경쟁 제안요청)에 따라 다수공급자 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 예산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 대상(한 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을 임의로 선택하여 구매하는 대신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한 후 선정 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해야 한다.

또한 동 업무처리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제안을 요청받은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고 등록된 계약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최대 10% 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제5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한 물품29)은 납품요구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CCTV 설치 공사 관급자재 중 영상감시장치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물품분류번호와 세부품명(품명이 동일하고 용도, 형태 등이 같은 것)이 동일한 관

²⁹⁾ 동일한 물품 :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10자리)이 동일하고, 제안대상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급자재로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급자재임에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설계도서 작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준수하여 특정물품을 지정해 설계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우수조달제품 및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 검토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외 3개부서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 특수한 기술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외에는 사업부서가 특정제품 규격 등을 설계도서에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수의계약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중 천 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을 34개로 한정하고 있고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이 중「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호3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인증·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품의 설치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요청 시 <별지5>에 따른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한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조달청 고시「물품 다수 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³⁰⁾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③「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제7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물류정책기본법」제57조,「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⑥「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⑧「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 1회 납품요구 대상 구매 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물품인 경우 1억원 이상 일 경우 2단계 경쟁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가격 제안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1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추홀구의 관급자재 구매나 물품 구매·설치 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사업부서에서는 특정제품 선정을 위한 자재선정위원회 개최없이 설계용역 업체가 특정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였음에도 용역업체에 자재 비교·검토를 요청하거나 자재선정위원회 절차 이행없이 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사업부서에서는 성능,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검토, 타제품 및 유사 제품과의 비교, 일정한 규격 및 내용 등으로 입찰에 따른 제조·구매가능 여부, 특정회사 제품의 필요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조달제품·성능인증제품을 결정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용과로 관급자재 구입요청한 문서에는 설계내역서, 우수조 달제품·성능인증 제품을 보유한 업체의 견적서, 우수조달제품·성능인증제품지정증 서, 우수제품의 규격과 시방서의 연관성 대비표, 수의계약요청사유서 등을 첨부되어 있으나 설계단계부터 타제품과 비교·검토없이 특정제품을 선정하고 설계내역과 시방서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규격과 시방서의 내용은 모두 일치하게 된 것으며 계약사유서에 대체·대용품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그 특정물품에 대한 대체· 대용품이 없을 뿐이지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물품이 없는 것은 아니며 설계내역에 반영된 모든 품목이 우수조달·성능인증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맞춤형 ☑️☑센터 건립공사의 빌딩자동제어장치 관급자재 설계내역을 확인한 결과 설계품목 중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된 것은 빌딩자동제어장치뿐이고 나머지 품목은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빌딩자동제어장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중소벤처기업부 고시)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우수조달제품으로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 조성공사와 ⊗⊗ 개보수공사 설계용역내역서에 인조잔디가 특정업체 제품으로 설계되었으나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확인 결과 우수조달제품 등록업체는 14개이고,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 등록 제품이 다수 존재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 가능함에도 비교검토나 2단계 경쟁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및 주민맞춤형 ◎◎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내역서에 지열시스템은 1인 견적서만 첨부해 특정모델을 명시하였으며 관급자재 구매요청 시에도 타제품과 비교검토 없이 특정모델을 명시하여 계약 의뢰하였다.

한편 미추홀구 &과에서는 사업부서의 문서를 근거로 해당 물품을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3자단가로 구입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의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및 설계내역에 특정제품 명시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추홀구 &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 타 제품과의 성능을 비교·분석한 자료 제출 여부, 종합쇼핑몰에 유사물품이 등재(우수제품, 다수공급자 계약 등)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대체·대용품 유무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사업목적, 용도, 제품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계약을 진행해야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자재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우수조달제품·성능인증제품등을 사유로 특정 업체 제품을 선정하여 수의계약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육과 외 5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지방계약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대상기간(2020.11.~2023.7.) 동안 총 *건(용역, 물품)의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다.

1. 평가항목 배점 조정사유 입찰공고 명시 소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따라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입찰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등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신인도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자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발췌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1.다-8'31)에 따라그 조정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점을 조정할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는 $10\sim30$ 점, 정성적 평가분야는 $50\sim70$ 점, 입찰가격 평가분야는 $10\sim30$ 점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배점조정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라에서는 20**. *.부터 20**. *.까지 총 *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한 사업에 대하여 그 조정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2. 정량적 평가분야 및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평가항목별 배 점한도는 정량적 평가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정성적 평가분야의 경우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50~70점 내로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정량적 평가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하여 부

³¹⁾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입찰공고

다.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⁸⁾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여한 배점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고, 미추홀구 ▲과에서는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을 조정 한도(50점~70점)에서 10점 초과한 80점으로 조정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3.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미작성 및 위원회 개최 최소인원 수 미충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2023년 미추홀구 ▶ ▶교육 위탁 운영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충족 최소인원 수의 3 배수인 21명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위원을 선정해야 하지만, 평가위원 모집공고 결과 7명의 위원 후보자가 접수하자 최소 21명의 예비위원명부가미작성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그대로 7명의 위원만 평가위원으로 확정하여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에도 미추홀구 ♣과 외 2개부서에서는 *건의 용역에 대해서 평가위원 수가 연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예비 평가위원 추가 연락 및 위원회 일정 변경 등평가위원 최소인원 수 확보를 위한 적정한 조치 없이 그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부적정하게 평가하였다.

4. 제안서 평가결과 미공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 등 그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의 계약정보시스템 또는 공지사항 등에 공개하여야 하나, 미추홀구 ☆과 외 1개부서에서는 *건의 용역을 추진하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 등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5. 관련 규정 개정 미추진 및 법규 준수 여부 검토 소홀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 9. 13.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주의사항 통보"32) 문서를 발송하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내부규정 등으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선정된 위원 중 2/3 이상 위원만 출석한 경우 위원수에 관계없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평가위원이 7인 미만인경우에도 제안서를 평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낙찰자 결정기준」과 달리 평가위원 최소인원수 미만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과 내부규정 등으로 평가위원 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그 후 인천광역시에서는 2021. 9. 23. 같은 사항을 관할 군·구로 발송33)하였으며, 미추홀구 육과 용역계약담당자는 2021. 9. 24. 해당 문서를 접수34)한 후, 전 부서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35)

³²⁾ 회계제도과-3858(2021.9.13.)

³³⁾ 회계담당관-21795(2021.9.23.)

³⁴⁾ 재무과-24306(2021.9.24.)

³⁵⁾ 재무과-24363(2021.9.24.)

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7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이 출석·평가하여야 하니 사업부서에서는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및 운영 규칙」중 관련 조항³⁶⁾은 개정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와 같이 미추홀구 &과는 2021. 9. 주의사항 통보 확인 이후 상위법 내용에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감사일까지 규칙 개정 관련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담당부서인 미추홀구 &과는 사업발주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시행 전 대상사업 검토 의뢰 요청을 하면, 계약부서 검토의견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위원 7명 이상 출석하여 개회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준수' 내용을 감사대상기간 내 모든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의견서에 첨부만 하였을 뿐 사업발주부서에서 추진하는 절차(평가항목 배점 적정 산정 여부, 평가위원 구성 여부, 예비명부 작성 여부, 제안서 평가위원 최소인원 수 충족 여부, 평가결과 공개 등)가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각 단계에서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유효하지 않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고, 사업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 결과 및 협상 완료, 계약 요청에 따라 미추홀구 용과는 최종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야 할 제안서평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3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 최소 인원수를 미충족한 상태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도록「인천광 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하시기 바라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평가분야별 배점 기준 준수 및 최소 평가위원수 충족,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로 적정하고 신뢰성 있는 제안서 평가가 실시되도록 하시고, 제안서 평가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개선 요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육과 외 2개 부서

내 용

미추홀구에서는 「지방계약법」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부터 감사일까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계약 총 *건을 1인 견적 수의로 체결하였다.

1.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법규 미준수

「지방계약법」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에 부쳐야 하되 계약의 목적·성 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유형별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 해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경제성,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 외 2개 부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최소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건을 계약대상자를 단독으로구두 지정한 후 계약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검토 과정 없이 사업발주부서의설계기초금액 대비 90% 범위 내에서 계약대상자와 구두 협의하여 최종금액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계약은 일반입찰을 기준으로 하되 수의계약은 일반입찰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계약담당부서의 재량이 많은 만큼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비롯하여 사업부서 설계금액, 다양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 실례가격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한 후 경제적인 금액, 품질등을 고려해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미추홀구 육과외 2개 부서는 이를 미준수하여 경제성과 투명성이 저해된 계약체결 결과를 초래하였다.

2. 특정업체 수의계약 과다 체결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여성·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인 경우 5천만원 이하)에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6. 8. 22.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을 의결하여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일정 횟수 또는 금액으로 제한하도록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미추홀구에서 2020. 11. 부터 감사일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폐기물처리용역과 실시설계용역 분야에서 특정 *개 업체의 체결 건수가 감사범위기간 내에만 총 *건이었으며, 특히 폐기물처리업체인 ① ① 의 경우 같은 날 *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사유없이 반복적 계약을 체결한 결과, 감사범위기간 내 총 *건, 계약금액 **원의 수의계약을 과다 체결하였다.

그 결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어 특혜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다른 업체에 주어져야 하는 공정한 참여기회를 박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가능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전직원 대상 수의계약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횟수·금액 상한제' 운영(예시) 등 미추홀구 수의계약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이를 일반회계 뿐 아니라 특별회계에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단일사업 분리발주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동

내 용

미추홀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년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산책길 일부 담장에 벽화를 제작하고 도색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건의 벽화도색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계약법」제77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하여 용역·물품 계약에 대해서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 기적으로 나누어 계약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2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 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미추홀구는 용역계약을 추진할 경우 하나의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 하여 계약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미추홀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년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벽화 도색 용역사 선정 시, 사업비 편성 및 사업 목적에 비추어 보 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단일사업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 제출 방법으로 추진해야 마땅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용역장소가 두 곳이라는 이유로 경쟁 입찰을 회피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2개 사업으로 분할하여 비슷한 시기에 각각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행정복지센터가 20**년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 관련 *건의 벽화 제작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통합 발주하였다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수의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다수의 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으며,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1인 견적에 따른 낙찰율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며 경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어긋나게 단일사업을 2건으로 부당하게 분할 발주하여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용역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용역 준공검사 및 대가 지급 기한 준수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외 8개 부서

내 용

미추홀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용역과업이 완료되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면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에 합격하여 대가 지급(준공금)을 청구할 경우 관련 서류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1. 용역 준공검사 지연 실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르면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37)한 기간인 2020. 7. 15.~ 2023. 12. 31.까지는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3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 안전부 제2020-69호, 제2021-43호, 84호, 제2022-46호, 77호, 제2023-52호): 2020. 7. 15. ~ 2023. 12.31.

그러나 미추홀구는 2020. 11.부터 감사일까지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를 시행하면서, □과 외 8개 부서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 완료 보고를 받고도 10일이 지나서야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등 총 *건의 용역계 약에서 준공검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 실시하였다.

2. 용역 대가 지급 지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은 동법 시행령 제 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38)한 2020. 7. 15.~ 2023. 12. 31.까지는 3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2020. 11.부터 감사일까지 계약상대자의 준공검사 합격후 대가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면서, *건의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 후 각각 *일과 *일이 지나서야 준공금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공검사 및 대가 지급 기한 준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 안전부 제2020-69호, 제2021-43호, 84호, 제2022-46호, 77호, 제2023-52호): 2020. 7. 15. ~ 2023.12.31.

주의 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실 외 31개 부서, 6개 동

내 용

미추홀구 본청 및 직속기관의 각 부서와 동에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1. 신용카드(업무추진비, 경비) 사용내역 미공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내역공개 대상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과 과장급인 장인 부서(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한다)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공개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하며,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로 하여 해당 기관의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등 16개 부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미공개 하였다.

2. 업무추진비 연간계획 미수립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을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31개 부서에서는 2021년부터 감사대상기간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공영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미추홀구청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노외 주차장)은 총 11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친환경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 등 설치 대상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용구역의 규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 및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충전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 및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은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전용구역은 100분의 5로, 동 조례 제10조 후단에 따라 기축시설의 충전시설은 100분의 2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제2조(기축시설① 에 대한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에 따르면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공기축시설의 경우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1년 이내(2023년 1월 27일)에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① 기축시설: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그러나 미추홀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총 주차대수의 5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소에서 전용구 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 비율을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과에서는 친환경차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8323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된 취지에 부합하도록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의무 비율을 미충족한 공영주차장 *개소에 대하여설치의무 비율을 충족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관련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도로점용 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 | | | 의 1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위임사항)에 따라 미추홀구 소과에서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미추홀구 賦과에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와 부담금 및 당해 연도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대장 관리 소홀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 따라 공작물·물건, 그 밖의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 청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공작물 등 시설물의 관리, 도로점 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도로점 용허가 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다.

도로점용허가 대장이 없어 다음 연도 도로점용료 부과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만 검토 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만약 허가 받은 자가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료의 부재로 이를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등 도로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허가 사항 관리 소홀

「도로법 시행령」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첨부서류 포함)에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는 미추홀구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으로 민원 접수부터 허가 처리, 점용 내용, 굴착·복구의 착공계·준공계 접수, 2차 복구 비용 산정, 점용 해당 연도 부과할 점용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ᡣ과에서는 굴착·복구 후 도로 점용이 지속되는 현황 자료를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과로 제공하여 도로점용 공작물 등 시설물의 관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결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분 *건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①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분 **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 ② 「도로법」등 관련규정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③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간 업무협조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과 해당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건설공사 보험료 등 정산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외 2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반영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5호, 2021.7.1.)」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도급금액에 반영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6.2.)」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같은 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같은 기준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추홀구에서는 *개 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고, 이후 '○○동 巴巴리모델링 공사', '¶ 및 리모델링 추가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사항을 뒤늦게 인지하고 종합감사시작 전인 2023. 7. 5. 업체에 환수 안내 및 납부 고지서를 계약업체에 통보하였다.

또한, '◀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마감공사'는 공사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 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공사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체(㈜員員)에서 착 공계 서류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한 도급계약서에는 낙찰률(87.87%)를 조정하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액 감액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보완하는 등 의 조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보험료 정산 소홀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1항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5호, 2021.7.1.)」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고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추홀구 ♣과에서는 '○○동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하며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 [시정] ① 정산하지 않고 지급된 '■■ 테니스장 부대시설 조성공사'의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원과 '○○동 巴巴리모델링 공사'의 보험료(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원에 대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건설공사 준공 시 정산이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증빙서류 확인 등 정산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도급계약 체결 시 낙찰률 조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미반영되어 도급내역이 작성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③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외 7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시행한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개사업이다.

또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외 *개 사업이다.

1. 품질관리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³⁹⁾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

³⁹⁾ 품질관리계획 대상: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제2항에 따라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제1항에 따라 건설 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제4항 [별표 5]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 기준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 규정하고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배치, 시험실 2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에서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중 '주민맞춤형 집 전 건립공사' 외 *개 사업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제출 지시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 **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외 *개 사업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동 ■■주차장 신축공사'외 *개 사업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 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음에도 배치 지 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안전관리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18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에서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 중 *개 사업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이행하지 않았고

'주민맞춤형 ☑☑센터 건립공사'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이 제출 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의 *개 사업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맞게 품질시험계획 검토 및 승인,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관리계획검토 및 승인 등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시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과 해당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공측량 절차 이행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 | | | 과 외 2개 부서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44조(측량의 항목 및 기준)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도로공사 및 건축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행하여야 할 측량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제2항에는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가 공공측량을 하려면 미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에게 제출'하고,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에서는 2020년 11월 이후 준공 및 진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외 *개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의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①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 「건설기술 진흥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공공측량성과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과 해당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ㆍ검수 및 판매소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과)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예규)」Ⅲ.세부시행지침, 1.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다.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시스템 도입 및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금지, 종량제봉투의 검수, 품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납품된 종량제봉투의 검수 시에는 검수 공무원이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에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를 하여야 하고, 시험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직접 통보받아야 한다.

검체의 채취 방법 등은 같은 지침 [붙임 3]종량제봉투 검체채취 및 판정기준에 따르며, 봉투제작업체로부터 제작완료를 통보 받은 검수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전량을 인수하여 관리가 가능한 창고에 입고시킨 후 지체없이 검체를 채취하고, 납품된 물품은 시험분석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업체별로 Lot를 구분하여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지침의 라.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판매소와 불법 제작 업체 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도매점을 통해 소매점 봉투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제출받아 판매량이 30%이상 급감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자 준수사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판매자는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할 때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모조·불법 유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진열 및 판매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는「페기물관리법」에 따라 20**. *월부터 20**. *월 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총 *회에 걸쳐 제작·구매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구 청에 납품·입고된 후 관련 지침에 따라 검체를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체 채취 및 시험검사 없이 검수(*회)하여 종량제봉 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판매량이 30%이상 급감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검수 시에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검수공무원이 검체를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분석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하시기 바라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신고 및 폐기물 처리실적 관리 소홀

「폐기물관리법」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구의 조례로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40)는 음식물류 폐기물

^{4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따른 ①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 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②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구 조례로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업종을 정하는 경우는 그 조례를 따름) ③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④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⑤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⑥ 그 밖에 구 조례로 정하는 자

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사업 개시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상호 또는 소재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8조(보고서 제출)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한 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처리방법,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관내 인허가된 식품접객업소를 확인한 결과, *개 업소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 중 *개소 사업장은 법 제38조 및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해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등 관련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실적보고 제출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

2.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지도점검에 따른 사후조치 미흡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에 따르면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관할 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고·검사 등)에 따르면 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자 등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 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따라 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등의 필요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또는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여 건조된 부산물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같은 조례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에서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사항의 이행,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에 따라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20**년에서 20**년 현재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였으며, 매해 1차 점검은 행정복지센터에서실시하고 1차 점검 결과 다량배출사업장 이행실태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하여 2차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점검결과를 보고 하였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의 1차 점검결과 점검대상 사업장의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을 통한 사실확인 없이유선확인 또는 안내문 발송으로 대체하고 안내에 따른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해 조치명령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 휴업 등으로 인해 1차 점검이 불가했던 사업장 등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페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음식물류 페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관할 음식물류 페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철저히 하시어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외 9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 등 10개 부서는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을 신고하였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및 제17조(배출자의신고 등)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41)(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42)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⁴¹⁾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 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을 말하며,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⁴²⁾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법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기술 및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4조(보고, 검사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 감사대상기간 동안 미추홀구가 발주한 건설공사 등을 확인한 결과, 미추홀구 *개 부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등 *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해당 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또는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2023. 7.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⁴³⁾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적정처리를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그리고 ☑과는 법정기한 내에 폐기물 처리실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위반사항에 대해 별도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이 미제출된 건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건설공사 등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가 누락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과)는「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에 따르면 다중이용 시설⁴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 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 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렁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44)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적용대상)에 따른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장례식장(지하), 영화상영관(실내), 학원, 전시시설(옥내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실내주차장 등 26개 시설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의 신규교육을 받고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⁴⁵⁾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및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소유자등은 그러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오염물질이 유지기준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권고기준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하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5)「}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에서 정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및 시행규칙 제12조(보고)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와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미추홀구 관할 다중이용시설의 20**년도 자가측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개소시설이 기한 내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았고 측정결과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개소의 소유자등은 기한 내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신규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2023. 7. 감사일 현재까지 이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는 매년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환기설비, 실내공기질 측정여부, 교육이수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면서 상기의 위법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미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을 안내하는 것으로 그쳤으며, 점검 외에도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교육 미이수, 자가측정 미이행 등 다수의 위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의소유자 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는 등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관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철저히 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가설건축물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건축법」제20조 제3항(가설건축물), 「건축법시행령」제15조 제5항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고, 가설건축물 축고·사용후 존치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알려 주어야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존치기간 14일 전까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제79 및 제80조에 따라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건축물이 법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경우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내용 및 시정내용을 기록하는 등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축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존치기간 만료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장조 사 후 원상복구(자진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표시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 여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존치기간이 만료된 ○○동 **번지 등 *개소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은 철거하거나 존치기간연장 신고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ㄷ마을 △△ 리모델링사업 용역 발주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미추홀구 ♣과에서는 ○○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내 주민공 동이용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다.

1. 설계의도 구현용역 발주 관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제1항에서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바목에 다른 지역자치센터,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용도의 건축시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ㄷ마을 △△사업의 규모 및 용도는 각각 설계비 추정가격 **천원, 제 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로 설계자를 시공과정에 참여시키는 의무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용역 과업 범위도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확인, 시공과정 중 디자인 관련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주요공정 공사현장 방문·확인,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 상이에 대한 대안 검토 등으로 일반적인 건축감리자, 공사감독자 등의 업무와 유사·중복됨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계약해야 할만한 특별한사유가 없음에도 용역 발주하는 등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2. 구조보강 감리용역 발주 관련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항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제19조(공사감리) 제1항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 시 건축사로 하여금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기계 분야 감리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구조보강 감리용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의무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업범위도 건축 감리자 과업과 유사·중복됨에 따라 구조보강 감리용역을 별도로 계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용역 발주하는 등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건축공사 설계구현 용역 및 감리용역 발주 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범위가 유사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노외주차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기준 검토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미추홀구에서는 관내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외주차장 신축공 사를 추진하였다.

「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제12호에 따르면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구청장 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 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방호 울타리 등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고시「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제4조(설치위치)에 따르면 추락방지시설은 주차공간 및 경사로의 외벽면 등 차량의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지침 제5조(구조안전)에 따라 추락방지시설의 설계시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2(구조계산)를 준용하여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세부지침 제7조(범용안전시설)에 따라 [표]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되 부재의 소성변형 등을 생각하여 충격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범용안전시설 구조설계 기준

충격력	충돌위치	충격력의 분포 폭
250KN 이상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cm	자동차의 범퍼 폭 160cm 이상

세부지침 제10조(기타안전시설)에 따라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추락방지시설로서 해당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기둥 정착형, 보 정착형, 독립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철근콘크리드조 건축물식 주차장 등 기타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표]를 충족하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에서는 ○○동 제2노외주차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시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야하나 확인·검토 없이 준공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동 제2노외주차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제10조에 따라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었지는 확인 후 구조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자 정밀조사 업무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항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공급·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관청은 같은 법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거래가격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 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과태료)에 따라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제4조(검증체계의 위탁) 및 제5조(검증체계의 운영)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이하 '수탁기관'이라함)에 위탁하고 부동산 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규정 제6조(상시 모니터링)에 따라 수탁기관은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고 있으며, 신고관청은 같은 규정 제7조(조사 대상) 제3호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한 검증결과 또는 수탁기관에서 통보한 확인결과 중 거짓신고로 판단되거나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국토교통부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부동산 실거 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자로 통보된 *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에 대한 적정성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훈계] 한국부동산원에서 미추홀구로 통보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자 정밀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위 관계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자 정밀조사대상 중 미조사 건에 대하여 조속히 정밀조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소과

내 용

미추홀구 △과에서는 주민맞춤형 ◎◎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였다.

1. 실정보고 처리기간 준수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제67조(설계변경 관리) 제8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미추홀구에서는 실정보고 관련 규정을 준수 하지 않고 지연처리하였다.

2. 부진공정에 대한 공정관리 업무 소홀

「업무수행지침」제94조(공정관리)제9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 건립공사는 20**. *. *.기준 공정률이 계획공정률 9.0% 대비 실적공정률 1.0%로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되기 시작하였고 20**. *. *. 계획공정률 82.0% 대비 누계공정률 40.71%로 누계공정 실적이 41.29%가 지연 될 때 까지⁴⁶⁾ 약 *개월 이상 미추홀구에서는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 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부진공정 만회대책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 등 공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 실정보고 처리 및 공정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20**. *. *.} 미추홀구 △과에서 시공사로 부진공정 만회대책 공문 발송

시정 요구

제 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허가권자는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제1항에 따라 허가권 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2005. 01.)에서는 위반건축물의 시정 명령 횟수,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시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신규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을 부과한 이후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동 **지 등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는 등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 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착공신고)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건축허가 대지 주변의 환경·토지이용계획, 관련 법률의 변화 등에 따라 추후에 공익에 반하는 건축물이 건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지체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동 **번지 등 *건에 대해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건축법」제11조 7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축허가(신고)는 취소 등 행정처분 하시 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및 종합보고서 처리 소홀

기 과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미추홀구 □과(이하 '미추홀구'라고 한다)는 관내 문학산을 비롯한 7개의 주요 산과 250ha 산림 및 가로수 15,144주 등 도시숲의 조성·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하 여 숲가꾸기 사업,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숲길 조성·관리 사업,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병해충 방제사업, 사방사업 등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산림기술법'이라 한다) 제26조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따르면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산림사업은 ① 제13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⁴⁷⁾.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

^{4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가. 3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

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벌채사업

다.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또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라.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그 밖에 발주청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발주청은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48)를 통보하여야 하고, 심사결과가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조건부 적정의 경우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를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발급하고, 부적정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기술법」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 제5항, 제6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에 따라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산림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산림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표 5의 항목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존·관리하여야 하고, 산림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는

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이하 "사방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 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자연휴양림등 조성 사업"이라 한다)

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이라 한다)

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원 조성사업"이라 한다)

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장림 조성사업"이라 한다)

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복원사업"이라 한다)

^{2. 「}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사업. 다만,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8조의2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48)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산림사업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

o) 1. 작성: 인산에 필요한 조시가 구세작이고 당요야게 계획되어 산념사업의 인산성이 중군이 확모되어 있다고 안? - 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영향은 없으나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산림사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 및 산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최근 3년간 "20**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개의 산림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의 사업은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청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의 사 업은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이에 대한 제출을 요 구하지 않고 사업을 준공하는 등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및 종합보고서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 및 종합보고서 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ㄹ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추진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미추홀구 □과(이하 '미추홀구'라고 한다)는 ㄹ도시농업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 계획(최초)결정(20**.*.*)하고 20**. *. * 공원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다음해인 20**. *. * 공원조성을 완료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 에는 승인기관의 장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에 따라 사업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중지·재개의 통보)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ㄹ도시농업공원 조성공사를 20**. *. *. 공사 착공 후 승

인기관인 市에 착공신고서를 통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일이 지난 20**. *. *. 착공신고서를 통보하였고, 공사준공일에서 *일이 지난 20**. *. *. 준공 통보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공원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직원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도시공원 · 녹지 점용허가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미추홀구 □과(이하 '미추홀구'라고 한다)는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 시키기 위하여 관내 170개의도시공원과 66개의 녹지를 조성·관리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공원녹지 관리청의 장에게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4조(허가신청서 등)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제12조(점용 또는 사용허가 기간)에 따라 점용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관리청의 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청의 장은 점용 또는 사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원녹지법」 제25조(원상회복)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점용허가의 내용(허가조건)과 다르게 점용하거나 허가기간 만료 등 점용사유가 소멸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최근 3년간 *건의 공원녹지에 대한 점용(변경)허가를 처리하면서 *건의 점용건에 대해 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점용물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만료일 기준으로 허가 조건 이행여부 및 점용기간내에 점용 대상지가 원상복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없이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등 점용허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공원·녹지 분야 영조물 배상공제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미추홀구 □과(이하 '미추홀구'라고 한다)는 도시개발사업 및 공원조성에 따라 신규 조성된 공원·녹지·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헌법」 제2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의거 도로 ·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하며,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에 따라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사업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기는 경우, 입은 손해에 대해 지방재정공제회가 손해보험사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 보상하는 공제사업으로 미추홀구는 *개의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공원·녹지를 인수하면서 어린이공원 *개소, 소공원 *개소, 연결녹지 *개소와 공원내 설치한 어린이놀이터 *개소, 운동기구 *개소에 대해 준공(사용개시일) 후 바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상당 기일이 지난 후 신청하여 보험적용 기간 공백이 생겨 만일의 사고가 발생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처리가 이뤄질 수 없어 공원·녹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신규시설물 도입에 따른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을 준공 (사용개시일)에 맞춰 가입하여 보험적용기간의 공백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절차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과 계 부 서 빼과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청문)에 따르면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제82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또는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제34조(청문조서), 제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및 제35조(청문의 종결)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청문을 종결하는 경우 청문 조서 및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함께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건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문 주재자로부터 청문조서는 제출받았으나, 청문 주재자 의 견서를 제출 받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는 등 청문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무단 폐업 공장등록업체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과 계 부 서 ▼과

내 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따라 공장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률 제16조(공장의 등록)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 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은 공장등록 대장에 등록하거나 공장등록 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면적(공장 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공장 건축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세부업종 변경사항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구청장은 공장이 멸실(滅失)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49)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6조(공장의 등록) 제6항 각호의 등록 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 행정기관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공장의 등록)에 따라 구청장은 제9조(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내용과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 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법 제16조 제6항 각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 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 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공장등록시스템상에서 국세청 폐업 자료정보를 조회하여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총 *개소 공장이 무단 폐업을 하였으나, 감사 기간 현황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개소는 취소원을 받아 취소하였고, *개소는 행정절차에 따른 직권말소로 처분하는 등 등록된 공장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한 공장에 대하여 공장등록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⁴⁹⁾ ①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②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③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주의 요구

제 목 담배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청문절차 미준수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과 계 부 서 🌐과

내 용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매인이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3(청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게 되어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하여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8조(청문 주재자) 및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제1항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가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와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50)에 근무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35조(청문의 종결)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고, 청문을 마쳤을 때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①과에서는 2021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건의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하면서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간을 10일 이상 정하여야 함에도 7일로 정하였고, 청문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 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7일 전 통지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건의 청문을 시행하면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지만 *건은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담당자를 선정하였고, *건은 결재 상에 있는 담당 팀장을 청문 주재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청문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문조서 및 주재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처분 한 사실이 있다.

^{50)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5조의3(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법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서는 해당 처분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단위로 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준수하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과 계 부 서 ▦과

내 용

「전기안전관리법」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받고도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며,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전기 안전관리법」 제52조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때는 전기 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미추홀구 ▦과에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개소에 대하여 *건은 20**년 *월에구청으로 통보되었지만, 구청에서는 20**년 *월에서야 개선명령을 통보하였고, *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용가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전기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미이행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가로등 시설물 정비 및 보안등 신설·이설공사(단가계약) 관련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과 계 부 서 ▦과

내 용

미추홀구 ᡣ과에서는 가로등 시설물 정비 및 보안등 신설·이설과 긴급 민원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유지관리로 주민 편익 증진 및 구정 신뢰 향상을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1. 물품 구매 계약 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미준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20**년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단가계약) 외 *건의 공사에서 철제가로등주 외 *건, 총 ***천원의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 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지 않고, 자재 창고 부 재로 인한 보관의 어려움과 다양한 종류의 가로등주로 인해 지급자재로 보유하기 어려운 사유로 사급자재로 설계 반영하여 집행하는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2. 고재처리 관련 예정가격 작성 미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공사 원가계산)에 따르면 공사원가 중 재료비는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부대비용의 처리가 있으며,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20**년 *월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한 사업에 대하여 위의 규정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하나, *개의 사업에 대하여 총 **천원을 재료비에서 공제하였다.

따라서 공사원가계산서의 재료비 항목에서 공제함으로써 기타경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제경비와 연동되어 예정금액(도급금액)이 감액되도록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피처분자(건설기계조종사면허자)를 보호하고 일선 지자체(처분권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에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중 처분관청이 판단하여 한 가지에 대해 처분하도록 문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미추홀구 鬪과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종료일이 만료 된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최초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또는 적성검사를 1년 이상 받 지 않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 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하나, *건에 대하여 상당기일 경과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하는 등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과

내 용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 등)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검사를 신청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규정인「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13조(검사 등), 제44조(과태료)는 (시행 2022.8.4.)[제18822호, 2022.2.3.]로 일부개정⁵¹⁾되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3조(검사 등) 제5항에 따르면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 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정기검사

⁵¹⁾ 건설기계관리법[시행 2022.8.4.] [제18822호, 2022.2.3., 일부개정]

⁻ 제13조 검사 등 제5항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 →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

⁻ 제6조 등록의 말소 등 제1항 제5호 '제13조 5항에 따른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제13조 5항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제44조 과태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의거 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10만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을 가산하여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받은 *건에 대해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를 상당기간 경과하여 부과하였다.

또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끝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 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하나, 상당기간 경과하여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 요구

제 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과 계 부 서 ▶ 기과

내 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7항에 따라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별표1에서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 사용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또한 최저 보유 차고 면적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20대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허가기준으로 하고 있고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1대)인 경우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광역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 허가를 받은 경우,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등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에 따라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임대 기간이 만료된 *건에 대하여 차고지 임대 기간 연장 또 는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여 변경 허가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나, 상당기간 경과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임대 기간이 만료된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시기를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요구

제 목 자동차 수출이행여부 미신고자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계부서 ▶ 과

내 용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자동차등록령」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에 따라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이내에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말소등록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자동차의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은「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신고 지연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마다 1만원을 가산하여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한편 인천시 교통관리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고자동차 수출의 어려움에 따라 중고차 수출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 제외기간을 수출말소 신고 기준 2019년 6월 12일부터 2020년 3월 11일까지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미추홀구 ▶파에서는 과태료 부과 제외 기간 2020년 3월 11일 이후 자동차 수출을 위하여 말소등록 후 9개월 이내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신고 만료일이 *일 이상 경과 되어 과태료 최고 부과금액(50만원)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상당기간 경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동차 수출이행여부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자동차관리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 훈계 요구

제 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절차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내 용

지방행정○○ AK은 20**. *. *.부터 20**. *. *.까지, 지방행정○○ AL는 20**. *. *.부터 20**. *. *.가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차고지 설치확인서 발급 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전자 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호52)의 사항

^{52)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3.} 토지이용계획정보(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해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상기 각호의 사항과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서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20**. *. *.부터 20**. *. *.까지 총 *건의 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발급하면서 현지 출장을 통해 서류의 내용과 동일한 지, 차고지의실제 활용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계약서나 토지사용승락서 등 서류제출만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차고지 설치확인서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건은 신청인으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명 또는 날인)를 받고서도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함에도 *건에 대해 서류 첨부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주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현지 출장을 통해 서류의 내용과 동일한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미추홀구 종합감사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목록

연번	제목	비고
1	시민협력 플랫폼「공감」운영	
2	지방공무원 겸직실태 조사	
3	1인 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 추진	수범사례
4	부서간 협업을 통한 고질민원(제물포역 노점 트럭) 해결	
5	1:1 맞춤형 식품인・허가 원스톱서비스	
6	시민협력플랫폼「공감」운영기준 보완	쾨 드 케 샤
7	일반·휴게음식점 배달전문 영업장 시설기준 면제	제도개선

시민협력 플랫폼 「공감」운영

○ 2020년 행정안전부 공모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에 선정 되어 조성한 공간으로, 기존의 시설과 달리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 들이 주민들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성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높은 인구밀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도시 문제 발생
- 주민참여 활성화 및 높아진 주민 눈높이에 비하여 부족한 민·관 협치 시스템 ☞ 민관 주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플랫폼) 부족

□ 개선된 점

-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주민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수요를 일정 부분 해결
- 주민 쉼터 공간 조성
- 다양한 개방공간 및 저렴한 사용료로 주민 접근성 확대

□ 기대효과

-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간 운영
- 주민 문제를 해결을 위한 민·관 통합 협력 플랫폼 활성화

□ 담당부서

○ 스마트정책실 (880-5916)

지방공무원 겸직실태 조사

○ 기관 내 지방공무원 겸직실태 조사 최초 실시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지방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사전에 겸직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이를 관리하는 복무 부서에서는 본인의 겸직허가 신청이 있기 전에는 겸직 여부를 알기가 어려움
- 또한, 우리 기관에서는 최근인 2022년 2월에 직원 1명이 겸직허가 신고 미이행으로 주의 처분 사례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2023년도 1월에 상반기 지방공무원 겸직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음

□ 개선된 점

- 겸직실태 조사는 기존 겸직허가자에 대하여 실제 겸직내용과 허가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이와 함께 전 부서에 겸직허가 제도를 안내하고 규정 준수를 촉구하였음
- 이를 계기로 우리 기관 내 상반기 겸직허가 신청 건수와 직원 본인이 직무 외 하려는 일이 겸직허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는 등 기관 내 겸직 제도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였음

□ 기대효과

- 겸직 신고 유도를 통한 예방관리
- 허가내용과 실제 겸직내용이 동일한지 반기별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880-4110)

1인 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 추진

-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적 고립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및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실태 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 이는 정책개발 및 취약계층을 위한 **표본 조사에 국한**되고 있어 신속한 대처와 위험에 처한 <u>1인 가구를 조기 발견 맞춤형 복지</u> 서비스지원에 미흡한 실정임.
-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가 가장 많은 위험군(만50세~65세)에 대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적으로 연령대별 전수조사**를 시행 **신속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미추콜실버센터) 협력체계 구축(1차 유선조사)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기여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복지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 빅데이터 활용(행복e음)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처리
 - * 단전・단수・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자료
 - 명예사회복지공무원(마을복지사) 활용 복지위기 가구 발굴
 - 온라인 기능(미추1004톡, 미추홀살피미앱)을 통한 발굴

○ (문제점)

- 실태조사 시 1인가구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국한되고 있음.
- 주민등록지가 다를 시 적절한 조사와 대처가 미흡함.
- 실태 전수조사의 경우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조사 어려움
 - * 00구 3개년 추진에 따른 연도별 7천만원 총 21천만원 투입

□ 개선된 점

- 노인일자리와 연계 1차 유선조사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로 예산 절감
- 노인일자리 창출 기여
 - 노인일자리(미추콜실버센터)와 연계 노인일자리(24자리) 창출
-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연계
 - 사회적 고립 측정을 통한 고위험군 신속 대처 (2023. 6월기준)

구분	지원내용	건수
공적서비스 연계	맞춤형 급여 신청안내 및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돌봄플러그 및 AI 안부확인 서비스 대상자 선정 등	109
민간서비스 연계	셀트리온 부식 및 생계지원, 밑반찬 지원, 각종 후원물품 연계, 장애인복지관 재가장애인 선정 의뢰 등	81
기타 서비스	고독사 고위험군 정기안부확인 서비스 연계 등	132
	322	

○ 전세사기 피해가구 발굴 및 지원

(2023. 6월기준)

구분	지원내용	건수
전세사기 피해가구 발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지원 연계, 해당 동 맞춤복지팀 연계	16

□ 기대효과

- 구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마련
- 사회적 고립가구 1인가구에 대한 <u>민·관 연계 시너지 효과</u> 증대
- 고독사 위험가구 등 신속 대처로 고독사 ZERO 인천 구축의 시초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880-4723)

부서간 협업을 통한 고질민원(제물포역 노점 트럭) 해결

- 2016년부터 과일트럭이 제물포역 앞 도로에 점유하여 노점행위 지속
- 장기간 노점 영위에 따른 단속민원이 있었으나 각 부서 단독으로 민원 해결 곤란
- 해당 부지의 지목은 철도부지이지만 토지이용계획상 광류3류로 지정된 도로임을 확인
- 부서간 협업(자동차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경관과)을 통한 고질민원 해결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과일트럭, 제물포역 앞 도로 점유 및 노점행위 지속
- 보행자 통행 및 미관상 이유로 단속민원 발생 2016년~2022년
- 과일트럭이 도로가 아닌 철도부지에 점유를 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움
- 하지만 해당 부지가 토지이용계획상 광류3류로 지정된 도로임을 확인

□ 개선된 점

- 부서간 협업을 통해 고질민원 해결
- (도시경관과) 도로(광류3류)임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노점 단속 실시
- (자동차관리과)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강제처리 예고
- (교통행정과) 차량 견인 지원 및 차량이동시 주차 방지 시설 설치
- 노점차량(과일트럭)의 자진 이동주차 2022. 8. 19.
- 관련사진



제물포역 앞 도로 점유 노점차량(2016년~2022년)



□ 기대효과

- 전철이용자 및 보행자에게 보행로 시야 확보 및 도시 미관 개선
-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향상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880-4541, 880-4519)
- 자동차관리과 (880-4536)
- 도시경관과 (880-4412)

1:1 맞춤형 식품인·허가 원스톱서비스

○ 식품 영업신고(허가)를 득한 민원인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업소의 위생개선 및 민원 만족도 제고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식품 영업신고(허가)를 득한 민원인의 사업자 등록 방법, 음식물 폐기물 처리 등 여러 부서 관련 문의 사항 다수 발생
- 민원인의 타 법령 저촉사항에 대한 정보 부재

□ 개선된 점

- 원스톱 서비스 안내문 제작 및 배포로 영업신고 후 후속절차 안내
- 관련 부서의 홍보안내로 식품업소 위생개선 및 편익 제공

□ 기대효과

- 영업신고 수리 후 민원인에게 후속 절차를 안내하여 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영업활동 도모
- 법질서 확립 및 업소 운영에 따른 타 법령 저촉에 대한 불이익 방지

□ 담당부서

○ 위생과 (880-4326~9)

시민협력플랫폼「공감」운영기준 보완

○ 시민협력플랫폼「공감」의 운영기준 마련 시, 유료 대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근거 등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인천시 감사관 질의사항)

□ 현황 및 실태

- 시민협력플랫폼「공감」의 다양한 공간 중 대부분의 공간은 미추홀구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사용 시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 발생이 예상되는 스마트팜, 요리교실에 대해 사용료 부과

□문제점

○ 유료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근거가 명시되지 않음

□ 개선의견(대책 등)

-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연간 운영계획 수립 시 유료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근거 명시
- 미추홀구 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에 해당 공간이 유료 시설이며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산출하고 있음을 안내

□ 관련법규, 및 소관부처(부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당부서> 스마트정책실 (880-5916)

일반 휴게음식점 배달전문 영업장 시설기준 면제

○ 배달전문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시, 시설기준 면제를 통한 절차 간소화로 영업신고자 편의 증진

□ 현황 및 실태

- 코로나19의 여파로 일반 및 휴게음식점 중 배달전문 영업장의 영업신고율이 증가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제4항에 의거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하여야 함

□ 문제점

- 영업신고 시 한식, 뷔페식 등 업태로 등록하게 되는데 '배달전문' 업태는 없음
- 휴게 및 일반음식점 중 배달전문 영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개선의견(대책 등)

-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 배달전문 업태 신설
- 배달전문 영업장의 경우 시설기준 면제

□ 관련법규, 및 소관부처(부서)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담당부서> 위생과 (880-4328)